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기념 학술대회

역경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역사, 국민이 지킨다!

일시 2021년 8월 30일 (월) 14:00 ~ 17:00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최 애국시민단체 연합

목 차

■ 행사개요	4
■ 행사순서	5
■ 참여단체	6
기 념 사 / 신철식	7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보내는 격려사 / 이인호	9
대한민국의 위대한 탄생 - 건국 7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축하하며 / 최대권	13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 / 김학성	25
신생취약국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남로당의 무장폭동 / 이주천	39
6·25와 사상전 / 이희천	65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기념 학술대회

I 목 적

- 건국역사 재조명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확립
- 건국주역, 건국정신, 건국의 과정과 완성, 역사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교육
- 자유민주체제 우수성을 기반으로 취약점 보완 강구
- 대한민국 위기상황 진단과 대책 연구
- 시민단체·정당 상호간 건국 의미 공유와 화합의 장 마련
- 대권 주자들의 역사관, 국가관 대국민 홍보 기회 제공

II 세 부 계 획

- 주 제 : ‘역경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 - 대한민국 역사, 국민이 지킨다!’
- 일 시 : 2021년 8월 30일 (월) 14:00 ~ 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 관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 주 최 : 애국시민단체 연합

■ 순서

사회 : 문무일 사무총장,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시 간	내 용	
(14:00-14:30)	등록	
(14:30-15:10)	개회식	국민의례
		기념사 : 신철식 회장,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격려사 :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역사학자
		축사 :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자
		축가 : 박승호 '선구자'
		정당 대표 등 축사
(15:10-16:50)	학술대회	제1발제 : 김학성 교수 -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
		제2발제 : 이주천 교수 - 신생취약국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남로당의 무장폭동 :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제3발제 : 이희천 교수 - 6·25전쟁과 사상전 : 민간인 학살 중심으로
		질의응답
(16:50-17:00)	기념촬영	다같이
	폐회	다같이

■ 참여단체

- 주관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 주최 : 애국시민단체 연합

국민통합연대/4대강보해체저지국민연합/공정사회국민모임/국민노동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재)굿소사이어티/나라지킴이교연합/대구자유공정시민회의/대국본/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인권여성연합/비상시국국민회의/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수도이전반대범시민투쟁본부/신문명정책연구원/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수호포럼/자유시민정치회의/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연대/제주도민연대/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제주4·3역사왜곡반대학부모도민연대/제주4·3정립연구유족회/프리덤코리아/프리덤칼리지장학회/하늘교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행동하는자유시민 등 39개 시민단체

기 념 사

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신철식입니다. 먼저 오늘 이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애국시민단체 대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주제발표를 하실 세 분의 교수님 그리고 이 행사를 도와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학술대회는 그야말로 일 년 중에 수차례 매년 올바른 역사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조출한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유감스러우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미 몇 년 전에 광복절 건국절 등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국가를 세운다는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다만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패배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 후 우리는 3년 동안 미군정을 치렀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념해야 할 날은 1948년 8월 15일에 세계 만방에 건국을 선포한 날이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수립한 정부와 국가는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를 벗어나 독립했던 백수십 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로 건국된 나라였습니다. 건국이 위대했음은 지난 73년 동안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건국절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심지어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수장이나 주요 구성원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조국을 부인하는,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4월 3일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주4·3사건 행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추념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행사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도 세상이 조용한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마침 한번이라고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 변호사님과 전 대법관을 지내셨던 이용우 대법관님 등이 이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다고 하여 제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추진을 해서 지난 8월 18일에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작년과 올해 있었던 추념사를 일부 신문이나 방송에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는 전문을 보여주지는 않고 일부만 보여주었습니다. 기념사가 짧을

수록 좋지만 못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의 핵심적인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덧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지난 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¹⁾

“...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²⁾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이라는 꿈을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 발표 주제 중에도 4·3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발제하신 헌법과 이념, 역사, 사상전의 세 가지 주제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명백히 해야 할 역사적 팩트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첫째, 건국헌법의 이념 그리고 그 가치, 둘째는 제주 4·3사태를 중심으로 신생취약국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남로당의 무장폭동, 세 번째는 6·25와 사상전으로 앞으로 해야 될 수많은 학술대회와 규명해야 될 역사적 사안들 중에 가장 긴급한 주제들이 발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행사 때 참석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가사를 생생히 기억하시는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쳐들어오던 날을” 이런 노래가 있는데, 작년 6·25 때 확인된 사실이지만 금지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행사가 빈번하게 더 크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하고 지켜볼 단계가 훨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유우파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기폭제가 되어서 더 많은 연구와 발표와 논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 4·3 추념사

2) 2021년 4·3 추념사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보내는 격려사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역사학자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보내는 격려사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역사학자

대한민국 건국 73주년을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특히 오늘의 학술회의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 위기와 정치파탄의 한 가운데서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듯한 지금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할 수 있는지를 몰라 당혹스러워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에게 작으나마 매우 핵심적인 마음의 표시를 할 기회를 이 학술대회가 마련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이자리에서 축사를 하기에는 제 심경이 너무도 착잡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 돌진해야 할 때이지 한가하게 ‘학술’ 논쟁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지금의 지경에 이른 것은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던 구한말의 경우처럼 우리의 경제력이 미약하고 국제적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역사의식의 부재와 그에 따른 국민의식의 해이에서 오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건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짚어 보며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일을 모든 구국투쟁의 기본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도 민생도 평화도 통일도 대한민국의 존재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지키고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이유 뿐 아니라 국제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탈출할 길이 없다 함을 우리의 뼈아픈 망국의 역사뿐 아니라 아프간사태 같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중한 상황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독립과 호국 부국을 위한 투쟁 이외에 삶이 따로 없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그 밖의 많은 애국선열들의 도덕적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못했고 태어났더라도 벌써 일찍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강대이웃들의 야욕과 세계 공산주의 전제체제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지켜 냈는가를 생생하게 일깨워 줌으로써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와 투지와 용기를 우리 애국 시민들 모두에게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 하시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39개 애국시민단체 연합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탄생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의 위대한 탄생

- 건국 7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축하하며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

보기 드문 코로나역병의 전 세계적 창궐과 좌파정부가 가져온 유례가 없는 퇴행적 경제 정책 및 사상적 정치적 혼란과 삶의 고단함·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UN기구(유엔무역개발 회의: UNCTA)까지도 선진국으로 선포한, 전 세계적으로도 우뚝 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일을 당당히 기억하고 소리 높여 기념하는 건국 73주년 기념 학술대회 행사장에 이렇게 뒹뒹하게 나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로서 축사를 하게 됨을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8·15건국기념일을 지내면서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광복을 기념한다고 했지 건국기념일임을 언급하는 일은 전혀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지요. 그리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2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³⁾ 오늘의 이 기념학술 행사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기념비적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언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여러 가지로 폄훼하는 시각과 괴담의 참담함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움, 풍요로움, 그리고 세계 어딜 나가도 당당히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준 그 기본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제 돌아서서 그 성취의 과일은 향유하면서도 그 기본을 폄하하고 부인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또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든 그 기본은 남북분단, 좌우대립 등 우리나라 해방 정국의 극도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38도선 이남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제헌국회의원을 뽑는 자유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구성된 제헌국회를 통하여 우

3) 이주영,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서울: 건국이념보급회 출판부, 2013); 강규형·김용삼·남정욱·정경희,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1948**, (서울: 가파랑, 2019) 참조.

리(대한국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그 정체성(正體性: identity)⁴⁾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채택을 결단하였으며, 그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그 해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완성된 대한민국의 건립을 세계만방에 천명하게 되었다는 위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국가는 국민, 영토 및 주권 등 3요소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초등학교 상급반 학생만 되어도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며 상식이고, 그리고 정부(수립)란 주권(행사)의 핵심을 차지합니다.⁵⁾ 그 8·15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국민, 영토 및 주권을 지닌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폄훼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1948년 8월 15일 날 중앙청 건물 앞에 걸린 플래카드에 쓰여 있듯이, 그날 선포된 것은 단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였지, 대한민국 건국 선포가 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독정부 수립에 지나지 않는다는 좌파들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폄훼주장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된 좌파들의 또 다른 대한민국 폄훼 주장의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의 자주독립운동을 구현 계승한 4월 11일의 중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주독립,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를 선포한 임시정부 헌법의 정신이랄까 법통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계승한다고 명시·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피눈물 나는 임정의 투쟁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외국 영토에서 선포한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일 수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운동권 주사파 등 친북 좌파들이 사모하는 북한 정부는 자기들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의 경우처럼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전통과 정신에서 찾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⁶⁾ 더구나 월북한 김원봉이 한국 국군의 뿌리라는 좌파정부의 주장은 웃길 뿐입니다. 그는 김일성체제의 핵심각료였으며 6·25전쟁 때 공훈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⁷⁾

좌파들의 대한민국 건국 폄훼 주장은 미묘하게도 대표적 독립운동가 가운데에서 유독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김구 선생을 앞세우고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그 방어와 번영의 기초를 닦은 이승만 박사에 대하여는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인양 친일파와 손잡고 단독정부를 수립한 독재자 등의 폄하주장으로 연계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나아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폄하하는 좌파 대통령의 연설로도 표현되곤 합니다. 그리고 6·25전쟁의 백척간두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 논쟁 및 현충원 안장 반대에 이릅니다. 또 산업화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요 독재자

4) 최대권,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은 무엇인가,” *국가전략연구 Global Affairs*, 세종대학교 세종연구원, 2011년 가을호(국가정체성 위기 특집호), 38-58면 참조.

5) 최대권, “근현대사는 역가학자 전유물 아니다,” *문화일보* 2015.11.11.일자 포럼 참조.

6) 북한헌법(2016) 서문 참조.

7) 최대권, “김원봉 추앙은 ‘대한민국 가치’ 배신,” 2019.6.11.일자 *문화일보* 포럼 참조.

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그 부강이 과연 그 같은 원죄 (peccatum originale; original sin) 일까요? 천우신조의 묘수였을까요? 소련군이 진주했던 북에서는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노린 사실상의 공산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이미 1946년부터 설립⁸⁾, 정부로서 계속 활동해왔으면서도 줄기차게 좌우합작을 명분으로 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면서 여러 모습으로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해왔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를 1948년 9월 9일에 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세미나에서 다루려는 4·3사태는 북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탄생의 초석인 5·10선거를 좌초시키려는 제주노동당책 김달삼이 이끈 빨치산 무장대가 도내 24개 경찰지서 등을 습격해 경찰·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참살한 무력폭동사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가 제기해야 할 질문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 폄하된 대한민국 건국은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남한에서만이라도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장착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무력 적화통일을 꾀한 피와 파괴의 6·25전쟁, 그 후의 온갖 파괴공작 등으로 야기된 간난고초를 극복하고 오늘의 위상,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을 꾸릴 수 있게 한 그 기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원래 남한에 거주했던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그 후 합류한 월남 또는 탈북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장차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었을 시 끌어안게 될 북쪽 동포를 포함한, 온 대한국민의 크나큰 축복이요 영광이라 믿습니다.

첫째로 해체된 옛 소련 연방 사회주의체제를 포함해 북측에 건설된 공산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의 전체주의체제와 남측 자유민주주의체제 사이의 체제 경쟁에서 어느 체제가 승자인가는 남북대결에서나 세계적으로도 이미 판가름 나 있습니다.⁹⁾ 해방 후 및 6·25때의 월남, 그리고 오늘날의 탈북은 체제 승자에게 지지를 보여주는 자발적 국민투표행위입니다. 1987년 봄 아직 사회주의체제가 살아있던 시절의 동구 위성국가에서 온 한 학자와 방문교수가 있던 미국대학(UC Berkeley)의 한 연구실에서 나눈 대화에서, 내가 당신네는 공산체제 치하에 있지만 나라가 분단되지 않아서 좋겠다고 했더니 정색하며 나온 “너희는 남쪽만이라도 자유가 있어서 참 좋겠다.”는 그의 아주 즉각적인 대답은 잊을 수 없는, 참으로 깊은

8) 처음 즉 1946년에는 “임시”를 붙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고 불렀습니다.

9) 2020년6월25일 한국전쟁70주년기념식에서 행한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국내 총생산(GDP)은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400배가 넘는다.”는 좌파 민주당 문대통령의 특별연설 참조. 그리고 Deidre Nansen McCloskey, *Why Liberalism Works: How True Liberal Values Produce a Freer, More Equal, Prosperous World for All*,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9); Matthew Kroenig, *The Return of Great Power Rivalry: Democracy versus Autocracy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U.S. and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등 참조.

인상을 내게 남겨 주었습니다. 이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제는 북녘의 동포들을 우리 품 안에 껴안을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닙니까? 2018년 개헌 논의 때 좌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조항으로부터 자유를 빼고 개헌안을 내놓았었는데,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체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만든 핵심적 요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요인을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아주 썩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처럼 모든 것을 중앙의 결정이나 통제에 의하여 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통하여 전체를 아우르게 하는 자유시장적인 체제가 그것입니다.¹⁰⁾

셋째로 노동당(공산당) 영도주의¹¹⁾와 민주적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¹²⁾를 장착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체제와 기본적 인권·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사법권독립 포함)·다원주의체제를 장착한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두 체제 사이에서는 좌파들이 좋아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를 아우르는 법치주의는 영어로 the Rule by Law이고, 자유체제를 담보하는 법치주의는 법 지배의 원칙 the Rule of Law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연방제는 당영도주의·민주적 중앙집권제를 담보하는 the Rule by Law와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연방제는 동일한 헌법적 틀 안에서의 지역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연방제는 헌법 차원의 지역분권이고 단일국가의 지방자치는 법률 차원의 지역분권이기 때문입니다. 옛 소련 연방에서 (미국의 주에 상당하는) 공화국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장치는 공산당중앙입니다.¹³⁾ 그러니까 당영도주의 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타당한 지역분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권

10) Ralf Dahrendorf, “Market and Plan: Two Types of Rationality,” in Ralf Dahrendorf, *Essays in the Theory of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215-231면(8장) 참조.

11) 북한헌법(2016) 제11조.

12) 북한헌법(2016) 제5조.

13) 최대권,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본질과 현상**, 2019년 겨울 58호, 46-69면, 특히 55-61면 및 65면 이하 참조. 그리고 최대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대권, “김대법원장이 ‘법의 지배’ 무너뜨린다,” 2021.2.5.일자 **문화일보** 포럼; 최대권, “정부 존재 이유 저버린 文정권 4년, 2021.4.7.일자 **문화일보** 포럼 등; 그리고 최대권, “聯邦制度,”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 (서울: 박영사, 1989), 373-418면; Brian Z. Tamanaha,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Tom Ginsburg and Tamir Moustafa, eds. *Rule by Law: Politics of Courts in Authoritarian Reg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Tom Bingham, *The Rule of Law*, (Penguin Books, 2010); Franz Neumann, *The Rule of Law: Political Theory and the Legal System in Modern Society*, (Leamington Spa: Heidelberg: Dover, NH: Berg Publishers, 1986) 등 참조.

력분립에는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연방제도 권력분립장치인데 일당독재(즉 당영도주의) 및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체제에서는 지역분권(즉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지역분권) 즉 연방제는 개념상 있을 수 없겠지요. 진정한 연방제라면 중앙정부의 조직원리가 문제겠지요. 만약 1당영도주의와 민주적 중앙집권제를 견지하는 북과 자유선거체제를 견지하는 다원주의적인 남이 어느 쪽도 헤게모니를 쥐지 아니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연합정부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통일된 중앙정부가 아니고 1991년의 남북합의서에서 합의한 바 있는 국가(또는 체제)연합체제 또는 그와 유사한 체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¹⁴⁾ 그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체제일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헌법(제4조)이 상정하는 통일은 아니겠지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체제 하의 통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제4조). 또 자유민주체제에서 형성된 인격을 지닌 사람은 체질적으로도 전체주의에서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면 체제의 우월한 경쟁력 때문에 자유민주체제 하의 통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조항(제1조제2항)은 한국민족주의 조항이기도 한데, 심정적으로는 물론 헌법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와 경제적 부(富)를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북녘의 동포에게도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명제를 헌법 제4조는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국민이란 영어로 nation 혹은 nationality이고, 흔히 민족주의로 번역되는 nationalism은 실은 국민주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두 단어 모두 nation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¹⁵⁾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어려운 것은 공산사회주의체제의 중국이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위치 내지 기능을 지닌다고 간주하는 북한을, 그저 굶어죽지 않을 만큼이지만, 확실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력 등 경쟁력이 약한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핵 및 그 운반체제의 개발로 겨우 버티며 생존하고 있으나, 그것은 소련이 쥘 핵이 소련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개혁·개방)의 방해요소가 되지 않았던 예를 보면, 중국에서 기독교화·민주화가 일어나 전체주의적 통제체제가 붕괴되면 북의 핵이 반드시 남북통일의 방해요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6·25전쟁 때 사회주의 중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때에 남북통일은 이미 이뤄졌을 것입니다.

넷째로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고(건국) 절대절명의 위기(6·25전쟁 등)에서 나라를 지키며 그 발전(산업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애국자들(한국의 the

14) 최대권, “「南北合意書」와 관련된 제반 法問題 - 특히 「特殊關係」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4권 3·4호, 1-38면(1993). 그리고 최대권, 韓國憲法の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 (서울: 박영사, 2001), 557-579면 참조.

15) 위에서 인용한 최대권,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특히 49-61면; 최대권, “民族主義와 憲法,” 위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 106-143면 등 참조.

Founding Fathers)에게는 예외 없이 친일파의 테두리를 씌우고 있습니다(framing). 이승만 및 박정희 두 대통령에게 씌운 친일파 테두리는 대표적 예죠. 백선엽 장군도 그 예의 하나죠. 대한민국에는 진정으로 건국의 아버지 즉 the Founding Fathers가 없는 것일까요? 이 현상의 이유 내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이념, 사상 내지 가치를 좌·우로 분류할 때,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좌의 spectrum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너무 넓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등 앞서고 오래된, 세계를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좌라고 하면 자기 나라가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정책을 놓고 좌우를 분류하지, 자기 나라의 기본 내지 정통성(입헌군주제, 건국의 아버지가 세운 의회주의·입헌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은 반역적이라 보고 좌에 포함시키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로 보는 입장이 어떻게 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자유가 없는 공산사회주의적 전체주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남한과의 체제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형편에서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부인한다면 북의 체제를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② 좌파들로 하여금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쉽사리 친일파의 테두리를 씌울 수 있게 만든 그 근본(그 원인제공자)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 근본은 단연 조선을 통치했던 일제의 우민정책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다수의 하급인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상급인 과장급, 국장급, 장관급 공무원, 군대로 치면 다수의 사병이나 하사관도 필요하지만 상급인 영관급, 장군급 군인도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기껏해야 하급 실무자급 조선인을 뽑아 썼지 독립한 국가 운영에 필요할 고급인재를 채용해 의도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노무자나 잡부로 혹은 사병이나 군속으로 강제로 징용해서 부려먹었지, 고급인재를 양성치 않았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건국 후 이승만 박사는 자주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셨다고 들었습니다.¹⁶⁾ 그 이유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 읽은 서민호 의원의 글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어학회사건으로 수감됐을 때 형무소 한국인 간수였던 사람이 1950년대 살인혐의에 연루되어 수감됐을 때 보니 교도소 소장이 되어있더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일제 행정기구나 군대조직의 하급 관리직이나 하사관이나 초급간부급의 경험자이면 이들을 채용해서 그것도 상위직급의 자리에 앉혀 그 노하우를 활용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국지사 색출에 유능했던 그 유명한 일제 고등계 형사였던 노덕술이 해방 후 공산간첩 잡는데도 유능함을 보인 경찰간부가 되고 나중에는 헌병수사대장이 되었습니다. 악명 높았던 그를 꼭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

16) 위 이주영,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145-146면 참조.

다. 다만, 그 이외의 일제 행정기구나 군대의 하위직급 경험자들은 실은 건국에 따라 당장 급했던 각 분야의 교육받은 유경험자 인재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인재 풀이었으니, 건국 후의 산적한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재능과 훈련과 경험을 그것도 중히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일제의 탄압과 우민정책의 전개 속에서도 지식인 사이에는 우리도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여러 형태의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3·1운동에 이어 1920년대에 민족지도자들에 의한 민립대학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허락지 않으면서(그래서 연세대, 고대 등은 겨우 연희전문, 보성전문 등으로만 허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학년 200여 명의 오직 의학부·법문학부로 구성된 경성제국대학¹⁷⁾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조선인 출신은 대략 그 10~30%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정치·경제이론이나 과학과 고등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려고 정치학부·경제학부나 이공학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무렵이 되어서야 전쟁 때문에 이공학부를 키워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그러니까 패망 불과 몇 년 전에야) 겨우 이공학부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해방 전 남한은 주로 농업 및 경공업 지역이었는데 해방이 되자 남한에는 과학자(scientist 및 engineer)는 물론 훈련받은 기술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한국인 과학자로 해방 전에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은 이는 단 두 분뿐이었는데, 이태규 박사는 6·25전에 이미 미국으로 이주해 Utah대학 화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승기 박사는 월북해 석탄에서 인조섬유(비날론)를 뽑아내는 기술로 공로상을 받는 등 북한에서 유명했습니다. 해방 전 일제 치하에 지주집안으로 재정능력이 있어 일본으로 유학 보낼 수 있던 집안 출신 자식이 아닌, 가난했지만 똑똑했던 조선 청년들이 쉽사리 고급 지식을 터득해 자기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었던 진로가 무엇이였을까요? 아마도 겨우 당시의 사범학교나 일본의 여러 군관학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범학교를 나와 일제의 (식민지교육을 담당하는)교사가 되거나 군관학교를 나와 일제하의 초급장교가 된 조선청년들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을 건국 후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상급 공직자 및 국군의 상급 장교로 발탁해서 유용하게 쓰인 행위도 친일이 되는 것일까요?

3

대한민국을 건물로 치면 대한민국 헌법은 그 설계도입니다. 빌딩이나 거대 건축물 등 설계도를 보면 그 건물의 목적이나 미래의 용도나 그 건물에 관한 모든 것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

17)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 문음사, 2002);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서울: 휴머니스트, 2019) 등 참조.

가치, 이상 등을 모두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대로 조직·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을 곧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정치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 가치, 이상을 어떻게 실현해나가느냐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니, 그리고 특하면 헌법을 바꾸자고 권력취득에 유리한 권력구조변경에 초점을 맞춘 개헌론을 버젓이 정치라며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기념비적 건물을 놓고 허물어야 한다거나 이리저리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야 그 건물이 원형은 물론 안전마저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그 전문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의 목표, 가치, 이상을 설정·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세계를 리드하는 영·독·불·일본·미국에서 자기 나라를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건국의 아버지”들을 자기 나라에서 타기하는 인물(즉 친일파) 등으로 우리처럼 매도하는 타령들을 권력 취득을 위한 좌파정치라는 이름으로 전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탈레반이 나라를 결판내는 아프카니스탄같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공로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어 그 후 맞이한 온갖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섰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유한 문자를 가진, BTS 등 여러 문화영역에 걸쳐 문화국가로서의 세계적 위상도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목표, 가치, 이상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세계를 리드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앞장서 노력하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의 위상을 이루어내자는 다짐을 건국 경축행사의 내용으로 다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남북통일의 성취를 이룩한 다짐의 핵심 내용의 하나로서 다짐합니다(헌법 제4조). 대한민국 헌법 하의 남북통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헌법 제3조).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최 대 권

참고문헌

- 강규형·김용삼·남정옥·정경희,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1948**, (서울: 가파랑, 2019).
- 강진용, **주체의 나라 북한**, (오월의봄, 2018).
- 박병엽 구술, 유용규·정창현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전 노동당 고위간부가 겪은 비화, (서울: 선인출판사, 2010).
- 전병무,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서울: 역사공간, 2012).
-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 문음사, 2002).
-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서울: 휴머니스트, 2019).
- 최대권, “김대법원장이 ‘법의 지배’ 무너뜨린다,” **문화일보** 2021.2.5.일자 포럼.
- _____, “김원봉 추앙은 ‘대한민국 가치’ 배신,” **문화일보** 2019.6.11.일자 포럼.
- _____, “근현대사는 역사학자 전유물 아니다,” **문화일보** 2015.11.11.일자 포럼.
- _____, “「南北合意書」와 관련된 제반 法問題 - 특히 「特殊關係」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4권 3·4호, 1-38면(1993).
- _____,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은 무엇인가,” **국가전략연구 Global Affairs**, 세종대학교 세종연구원, 2011년 가을호(국가정체성 위기 특집호), 38-58면.
- _____,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본질과 현상**, 2019년 겨울 58호.
- _____, “民族主義와 憲法,”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 106-143면.
- _____,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_____, “聯邦制度,”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 (서울: 박영사, 1989), 373-418면.
- _____, “정부 존재 이유 저버린 文정권 4년,” **문화일보** 2021.4.7.일자 포럼.
- _____, “韓國憲法の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 (서울: 박영사, 2001), 557-579면 참조.
- Tom Bingham, *The Rule of Law*, (Penguin Books, 2010).
- Tom Ginsburg and Tamir Moustafa, eds. *Rule by Law: Politics of Courts in Authoritarian Reg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Franz Neumann, *The Rule of Law: Political Theory and the Legal System in Modern Society*, (Leamington Spa: Heidelberg: Dover, NH: Berg Publishers, 1986) 등 참조.
- Matthew Kroenig, *The Return of Great Power Rivalry: Democracy versus Autocracy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U.S. and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Deidre Nansen McCloskey, *Why Liberalism Works: How True Liberal Values Produce a Freer, More Equal, Prosperous World for All*,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9).
-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Brian Z. Tamanaha,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건국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해방이란 말만 난무한다. 건국절 날 태극기를 아파트에 걸면서도, 또 태극기를 등에 꽂고 걸어도 눈총을 받는 나라로 전락했다. 나라가 이렇게 어두운 시절 건국 73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려 뜻깊다.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란 건국헌법이 지향한 이념이나 가치를 말한다. 이념과 가치는 통상 헌법 규범에 구체화되므로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건국헌법에 구체화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적절하다.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살펴봄에 있어 첫째, 1948년 헌법을 왜 건국헌법이라고 하는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하고 둘째, 건국헌법에 영향을 준 이념과 가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셋째, 이념과 가치가 구체화된 개별적 헌법 규정의 내용과 의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국헌법이 채택한 이념과 가치가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차례로 보기로 한다.

1. 1948년 헌법은 건국헌법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1) 1948년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부르는 견해도 충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만, 건국헌법으로 보고자 한다. 1948.5.10. 선거는 ‘헌법을 만들 의원’인 ‘제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며, 선거 결과로 만들어진 의회는 ‘헌법을 만들 의회’, 즉 ‘제헌국회’이다. 제헌국회는 제헌에 초점을 두었기에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다(건국헌법 부칙 제102조). 제헌국회는 ‘제헌위원회’의 성격 외에도 ‘의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건국헌법은 헌법이 만들어진 후 의회의 해산을 예정하지 않고 국회의 존속 유지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2) 제헌의회가 만든 헌법은 ‘헌법을 만드는 헌법(제헌헌법)’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헌법’이라는 건국헌법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제헌의원, 제헌국회, 건국헌법’으로 이어지

는 것이 논리적이고 바람직하다.

(3) 일부 논자들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려고 하는데 수많은 논거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 1919년 임시정부가 만든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¹⁾과 그 이하 5차례 개정된 헌법은,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 단계인, 말 그대로 ‘임시’정부가 만든 헌법이기에 건국헌법으로 불릴 수 없다.

2. 건국헌법에 영향을 준 이념과 사상

건국헌법은 임시정부의 ‘독립 및 건국 정신’과 국호, 영토, 국민 등의 ‘국가의 기본 틀’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1941년 임시정부가 만든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1) 건국헌법은 임시정부가 마련한 국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가) 국호, 법통

건국헌법은 임시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호를 ‘대한’으로 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이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함에 ‘대한’은 망한 국호이며 일본에 합병된 국호이니 사용하지 말자는 적극적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일본에게 빼앗긴 국호이니 다시 찾아 독립했다는 의미를 살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대한으로 했다.

건국헌법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을 계승한 것이지만, 건국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국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놓고 다시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 헌법기초위원회의 투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건국헌법은 대한민국을 국호로 채택하였다. 현행 헌법은 3.1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²⁾을 이어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헌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 위 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국가형태를 민주공화국으로, 국무총리를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하였고 평등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소유권, 선거권, 기본의무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민주공화제를 선포함으로써 기존의 군주정의 정치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수립하였다. 임시헌장은 국가형태를 공화국으로 했는데, 1,000년 이상 군주제를 유지해 온 나라에서 서구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주파와 공화파의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김학성, 헌법학원론, 2021, 67면).

2) 북한은 임시정부를 전면 부정하면서, 김일성 그룹의 무장투쟁 및 해방 이후의 사회변혁을 강조하고 있다(박명림,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9집, 2009, 258면).

(나) 영토

건국헌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그 영토로 한다고 하여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는 헌법이였다. 건국헌법의 영토조항(제4조)은 임시정부 제1차 개정 헌법(대한민국임시헌장) 제3조(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조선과 민주주의와 인민공화국’의 조합으로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는 헌법을 1948년 9월 제정하였다. 북한은 영토조항을 두지 않은 대신 수도조항을 두었는데, 서울을 그 수도로 하였다(북한헌법 제103조). 1972년 12월 헌법 개정을 하면서 24년간 유지하였던 서울-수도조항을 삭제하고 평양을 수도로 규정하였다.

(2) 1941년 대한민국건국강령과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

(가)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의 청사진을 밝힌 선언이다. 건국강령은 3개의 장(총강, 복국, 건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강 7개 조, 복국 8개 조, 건국 7개 조로 총 22개 조로 되어 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³⁾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정치선언으로, 1944년 제5차 임시정부 개정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건국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건국강령은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를 종합하고 있다. 건국강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건국헌법 제정에 기여하였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과는 무관하다.

(나) 1944년 4월 임시정부 제5차 개정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본문 62개 조로 된 헌법으로 임시정부 헌법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44년의 임시헌장은 1941년의 건국강령의 정신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44년의 임시헌장은 제1조 국호(대한민국), 제1조 국체 및 정체(민주공화국), 제2조 영토, 제3조 국민, 제4조 주권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기본 틀을 명기하였다.

동시에 44년의 임시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의 기본권조항에 비추어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장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6조는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선거권은 18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은 25세로 규정하고 있다.

3) 조소앙의 이념과 사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송석윤, 조소앙의 헌법사상: 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2020,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참조.

3. 건국헌법의 개별 규정에 내재된 이념과 가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국헌법의 전문은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헌법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별 규정에 구현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1) 건국헌법은 민주주의 원리를 그 기본 헌법 원리로 하고 있다.

(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⁴⁾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치원리로서,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이 만들어지고 행사되도록 하는 국가구성원리이다.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주의⁵⁾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자유와 민주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의어로 보아야 한다. 이같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이나, 자유가 더 수식되어 있는 것은 사회주의헌법이 자신의 통치원리를 인민민주주의라 하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어, 서구 입헌주의 헌법질서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과거 동구권이나 현재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사회주의국가 헌법의 인민민주주의⁶⁾는 서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들을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나)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그 내용으로 하며, ‘정당, 선거, 지방자치’로 실현된다. 국민주권의 의미는 첫째, 군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둘째 국민 중 특정 계층에게만 주권을 긍정하는 인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셋째,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 천명한 것이다. 건국헌법은 제2조에서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다.

4) 사회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사회주의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해서는 생산수단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사회주의는 첫째,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와 반대되며(전체주의),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자유주의와 반대되고(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강화), 셋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반대하며(생산수단의 사회화 강조), 넷째, 자유보다 실질적 평등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김학성, 전거서, 128면 이하 참조).

5)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학성, 전거서, 125면 이하 참조.

6) 1948년 북한 헌법은 인민민주주의를 지도원리로 하였다.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민은 노동자계급과 농민, 지식인을 지칭한다(지주, 대자본가 등은 제외됨). 인민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로 이행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사회주의로 이행되면 그들이 말하는 인민, 즉 모든 근로자에 의한 지배(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된다고 한다. 북한은 1972년 헌법부터 사회주의를 중요한 구성원리로 하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이행되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장명봉,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구조와 특색”, 저스티스, 1992, 131면).

(다) 보통선거, 선거권, 친일파 청산, 선거공영제

㉠ 보통선거

건국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고, 제32조는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 조직한다고 함으로써, 1948년에 이미 보통선거를 실현하고 있다. 미국도 흑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것이 1960년대이고, 스위스가 여성참정권을 인정한 것이 1971년인 것에 비하면 정말 일찍이 민주주의 상징인 ‘보통’선거를 실현시키고 있다.

㉡ 선거연령, 서명과 날인, 무기명 투표

1947년 6월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입법의원선거법은 23세 이상, 선거인 등록 시 직접 서명하게 하였으며, 본 선거에서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쓰는 자서제였다. 당시 문맹률이 80%에 이르렀기에 문맹자들은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었다. 문맹자투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룬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다.

1948년 3월 공포된 입법의원선거법은 선거연령을 23세에서 21세로, 선거인 등록은 직접 서명하는 대신 날인의 방식으로, 이름을 쓰는 자서제를 후보를 선택하는 기표제로 바꿨다. ‘남녀’ 및 ‘문맹·비문맹’ 모두 선거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이승만의 놀라운 업적이다. 당시 5.10 선거의 투표율이 71.6%에 달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는데, 이 모든 것은 문맹자를 깊이 배려한 이승만 박사의 노력에 기인한다.

이러한 선거방법은 1948년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는 선거인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표 용지에 자서하거나 문자를 해독하는 증인 2인 앞에서 무인하게 하였고, 동법 제32조는 단기무기명투표로 행하게 하였다. 70년 전 선거법치고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 선거공영제

동법 제2조는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에게 선거권을 박탈하였고, 동법 제3조는 ‘일제 강점기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급 헌병,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급 기밀정행위를 한 자’, ‘일제 시대에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삼의가 되었던 자’, ‘일제 시대에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일제 시대의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7등 이상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친일파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실현했다. 동법 제7조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함으로써 선거공영제의 기틀을 잡았다.

(라) 지방자치

건국헌법은 제8장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함이다. 제96조와 제97조는 현행 헌법에서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2) 건국헌법은 법치주의 원리를 그 기본 헌법 원리로 하고 있다.

(가) 법치주의

국가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의 충족만으로 부족하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원칙에서 벗어나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힘을 지닌 국가권력은 남용되고 결국 자유와 권리의 보장체계는 훼손되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공동체는 국가권력의 행사가 그 방법이나 절차 및 형식에 있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게 된다.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을 법에 기속시켜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과 같은 국민의 중요한 자유와 권리가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헌법 원리이다.

(나)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기본권, 권력분립, 국가권력에 대한 법적 구속, 법률유보,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건국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만 보기로 한다.⁷⁾

건국헌법은 제8조에서부터 제28조까지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제28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법률유보를 규율하고 있다.

헌법은 초등교육을 무상의 의무교육으로 하였고, 여자와 소년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70년 전의 ‘국가백지상황’을 감안 할 때 매우 획기적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는데(건국헌법 제15조), 이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재산권을 천부인권으로 보지 않고 국민 모두를 위해 강한 제한이 가능한 실정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특이한 점은 사기업의 근로자에게 이익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건국헌법 제18조). 이는 강한 사회주의 색채를 지닌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물론 시행되지 못하고 제5차 헌법 개정 시 삭제되었다. 당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체제경쟁을 하는 와중에 사기업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들어간 것으로

7) 법의 지배,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학성, 헌법학원론, 239면 참조.

추정된다.

(3) 건국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그 기본 헌법 원리로 하고 있다.

(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완전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제체제로, 재화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경제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경제를 말한다. 고전적 경제이론에 의해 지탱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영역에서의 자유보장은 불평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지 못했다. 부의 편재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근로계급의 형성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과 투쟁, 독점자본의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권력의 등장이 그것이다.

㉡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경제·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불평등, 특히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방법은 그 방향과 정도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진다. 이미 형성된 불평등을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의 근원을 없앨 것인가, 또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적으로 일시에 할 것인가이다. ‘불평등 제거’에 중점을 두게 되면 ‘소득분배와 재분배’에 중점을 두게 되지만(사회개혁), ‘불평등의 근원 제거’에 중점을 두게 되면 소유 자체를 사인에게서 빼앗아 ‘국유화 내지는 사회화’하는 방법을 시도하게 된다(사회혁명).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개혁’ 대신에 ‘사회혁명’의 방법으로 불평등의 근원 제거를 이념으로 하는 ‘사상, 경제체제, 국가’가 있다. 이들 국가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중앙에서 경제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계획경제’라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회적 시장경제’⁸⁾와 전혀 다른 것으로서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전체국가는 필연적으로 계획경제일 수밖에 없으며 계획경제는 반드시 독재로 이어진다.

8) 사회적 시장경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닌다. 첫째, 시장경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은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기업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초한다. 둘째, 순수한 자유방임 정책을 부정한다. 경제에 대한 자유방임은 시장의 권력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형성된 독과점은 시장의 경쟁구조를 위협하게 되어 자유로운 시장질서는 방해함으로써 결국은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쟁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국가의 경제개입이나 관여가 요구된다. ‘자유와 경쟁’에서 낙오된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개입·규제·조정이 필요하게 된다(김학성, 전개서, 264면 이하).

(나) 건국헌법의 경제질서

㉠ 통제경제질서

건국헌법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경제에 대한 강력한 국가간섭이 허용된 경제체제, 일종의 통제경제질서였다. 건국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와 비교할 때 ‘원칙과 예외’에 있어 차이가 있다.

현행 헌법이 자유를 원칙으로 규제를 예외로 하였다면 건국헌법은 규제를 원칙으로 자유를 예외로 했다. 결국 건국헌법은 현행 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보다 더 통제경제적 성격을 지닌 경제 질서였다.

건국헌법의 통제경제질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것은, 헌법 제18조의 ‘이익분배균점권’, 헌법 제87조의 ‘중요기업 및 공공성 기업의 국 공유’, 헌법 제88조의 ‘사영기업의 국·공유이전’ 등에 잘 나타나 있다.⁹⁾ 이것은 당시 좌우의 극심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¹⁰⁾ 속에서 선택된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로 보인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과 관여를 허용했던 것은 당시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 하였고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회의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 농지개혁

건국헌법 제86조는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일제 강점기 80%가 넘는 소작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분배하는 농지개혁은 가장 최우선의 헌법과제였다. 자유 민주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농지개혁과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북한의 농지개혁¹¹⁾이 대한민국의 농지개혁보다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농지개혁의 경우,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남한은 ‘유상몰

9) 건국헌법 제1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제88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북한은 1946년 ‘중요산업국유화령’을 제정하여 중요 기업들의 소유권을 정권에 귀속시켰다. 작은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했다. 1953-1958년 집단농장제로 개편하여 모든 토지 소유권을 개인에게서 협동농장으로 귀속시켜 토지의 사회주의화를 종결했다.

11) 1946년 2월 북한은 사실상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3월에 토지개혁을 25일 만에 전격적으로 완료했다. 무상분배를 시행한 결과 4,500명에 불과한 공산당원이 토지개혁 직후 27만 명으로 급증했다.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긴 지주들은 48시간 이내에 마을을 떠나도록 강요받았고 20여만 명의 지주들이 고향을 떠나거나 38 이남으로 탈출했다. 이들은 반공전사가 되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 역할을 했다.

수 유상분배'방식을 취하다 보니, 북한의 농지개혁이 남한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후 국가가 소출의 40%를 세금으로 거두어 갔고, 1950년대 중반에는 무상분배된 농지를 모두 '집단 농장화'했다. 반면 남한은 유상분배를 적용했지만 소출의 30%를 5년만 내면 자신의 농지가 될 수 있도록 했기에, 30% 상환이 부담스러워 분배받은 땅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농지개혁의 성과를 분배의 '무상'인가 '유상'인가의 외형형식으로만 비교해서는 안 되며, 농민에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가로 판단해야 한다. 경작자에게 농지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유리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해방 당시 농민의 85%가 소작농이었는데, 1949년 농지개혁은 소작농의 '세습 천형'으로부터 농민을 해방시켜주었다.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세계적 성공사례로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루게 하는 근간이 되었다.

(다)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의 전환

1954년 제 2 차 개정헌법은 건국헌법의 통제경제질서를 좀 더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 전환시켰다. 제2차 헌법 개정에서는 건국헌법 제87조의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공공성을 지닌 기업의 사영'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제88조의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규정을 수정하였다. 사유재산의 사회화를 쉽게 허용하였던 것을 어렵게 했다. 사유재산의 국공유화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그 후 제 5 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경제조항이 수정되는데 건국헌법 제18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소위 '근로자이익분배균점권'을 삭제하였다.

(4) 건국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그 기본 헌법 원리로 하고 있다.

헌법 제7조는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국제법을 존중하겠다는 '국제법 존중주의'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국제법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현행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4. 건국헌법이 채택한 이념과 가치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함은 물론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1) 주지하는 대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해방정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해방되었기에 독립국가를 만드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었다. 좌익과 우익 간의 이념 대립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강대국들의 독립유보(신탁통치)로 민족이 두 동강이 날 정도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1945년 후반부터 소련은 북한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고, 북한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민군을 창설하는 등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하였다.

반면 남한은 미군정의 좌우합작 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정치적 ‘안목과 결단 그리고 독심’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를 지닌 대한민국을 출발시킬 수 있었다.

20세기 전반부는 공산주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공산주의가 많은 신생국가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다. 동북아의 몽골, 중국, 북한이 공산화되었는데 기적적으로 남한은 민주국가로 존속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남한사회는 민주주의 지지자가 20% 미만이었고 대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지지자는 70-80%에 이르렀던 상황이었다. 당시 이런 현상은 사회주의가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만든다고 선전하고 있었기에 사회주의에 마음이 쏠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80% 이상이 소작농이었기에 ‘농민을 위한 나라’라는 구호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거시적 혜안, 결단, 독심의 덕분으로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이며 세계 최빈국인 북한 정권의 지배 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2) 건국헌법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은 이승만 박사의 주장으로 된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이 신생국가이기에 강하고 안정된 국가권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체주의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도 강한 힘을 지니는 대통령제를 선택한 것이라 보인다. 우리 헌정사를 돌아보면 대통령제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제 결단이 옳았다고 본다. 건국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제의 본질과 거리가 있지만, 당시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1948년 8월 15일에 맞추어 정부를 수립하려면 ‘국민의 직선’으로는 시간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현행 헌법은 건국헌법의 지배 이념이나 가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를 위협하는 사상,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지·동조하는 세력들에 의해 많은 위협에 처해 있다. 얼마 전 제주 4·3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추모사를 보면,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으로 천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의 추모사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의무를 부과한 헌법 제 66조 제2항에 정확히 위반된다.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논하는 것도 이러한 현 사태를 돌아보고자 함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학성, 헌법학원론

김학성, 전개서

박명림,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9집, 2009

송석운, 조소앙의 헌법사상: 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2020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장명봉,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구조와 특색, 저스티스, 1992

신생취약국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남로당의 무장폭동

이주천,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신생취약국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남로당의 무장폭동

-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이주천¹⁾,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남로당

1. 소련군정의 북조선 ‘민주기지화’
2. 박헌영의 남로당과 배후의 소련군정

III. 제주4·3사건의 배경: 유엔 결의 반대투쟁

IV. 제주4·3사건의 6대 쟁점들

1.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성격
2. 제주남로당의 무장폭동의 목적은?
3. 중앙당 지령이 없었나?
4. 부풀려진 피해자 수치
5. 김익렬의 寄稿(기고)와 遺稿(유고)의 진실 논란
6. 단정 수립의 정치적 책임론

V. 결론

* 참고문헌

1) 제주4·3사건정립시민연대 역사수호위원장

I. 문제의 제기: 건국의 배경과 대한민국의 국가체제 성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추축국에 점령당하거나 일제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신생국가로서 건국을 했는데, 건국의 절차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내적 선거와 국제적 승인을 거쳐야 했다. 1차, 2차 대전의 비극을 겪으면서 연합국은 항구적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제 문제를 토의할 유엔을 창설하게 된다. 향후 신생국가들은 모두 연합국이 만든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사회에서 신생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국제적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건국도 이런 유엔의 승인 절차를 수용하여 오늘날 성장, 발전해 온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하고 탄생시킨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면서 연합국은 한반도를 접수하면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점령하고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하여 각각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 당시 1945년 12월, 미영소 외상들의 모임인 삼상회의가 열려 한반도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신탁통치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미소공위는 공전을 거듭하게 된다. 남한의 우익세력은 반탁운동을,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세력은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급선회하면서 정국은 혼미를 거듭했다. 미군정은 가급적 소련의 협조를 통한 신탁통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그래서 김규식-여운형이 중심이 된 좌우합작 정부를 구상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지식들을 신탁통치정부의 각료 인선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련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1947년 여름 2차 공위에서는 미소 간에 아무런 양보가 없이 완전한 결렬상태가 되었다. 결국 미국은 그 해 가을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고 미군정은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건국을 서두르게 되었다. 국군과 경찰의 병력을 급속도로 증강하기 시작했다.

1948년 5·10총선은 유엔의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결의사항의 이행이었던 것이다. 1월에 총선거를 감독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하고 활동을 개시했는데, 북한의 김일성은 국제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위원단의 38선 월경을 거절하였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김일성이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구성을 거절한 것이다. 이 배후에는 소련의 스탈린 지령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5·10총선거를 거절하고 통일정부를 방해한 것은 스탈린과 김일성이었지, 트루먼과 이승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건국할 당시부터 신생취약국가(newborn vulnerable state)의 성격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한때 역사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적 성격논쟁에서 ‘파시즘 국가’로 정의한 적이 있었지만, 파시즘 국가는 강력한 무장력을 갖춘 군대와 치밀한 관료제, 그리고 자본가그룹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차 대전을 발발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건국 초기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격은 파시즘 국가도 아니고, 치안의 유지와 국가안보에 국력을 집중했던 권위주의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은 남한은 경공업 중심으로 공장 자체도 제대로 돌리지 못했다. 일본인 기술자와 자본가들이 대거 일본으로 탈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시민사회 역시 형성되지 못했던 한국에서는 시민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해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피할 수 없고 당장의 치안유지와 질서유지를 통한 체제유지가 가장 긴박한 현안문제로 등장했다. 경찰, 군대, 관료 등의 국가 기구를 통한 강권 지배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기구들 역시 일제 강점기와는 달리 창설 과정부터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충분한 권력자원을 지닐 수 없었다.

요약해보면,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초기의 국가는 국가건설을 위한 모든 자원이 부족했고, 정치적 정통성과 부르주아라는 정치적, 사회적 메커니즘 역시 갖추지 못해 상층부 권력과 하부구조적 권력 모두가 낮았던 취약국가였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에도 국가의 구성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1948년에 수립된 정부는 단지 사법상의 국가(judicial state)에 불과했다.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고, 대학 졸업자 역시 7,5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다.²⁾

1948년 당시 산업 생산성은 2차 대전 이전의 80%에 불과했고 높은 인플레이와 식료품 부족, 숙련된 기술자와 전력 부족,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피난민들과 귀국자들로 인해 경제 성장의 전망마저 암울했다.³⁾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기구는 모든 자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건설되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일제강점기의 국가기구와 비슷한 외양과 인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기구들이 여전히 동일한 실제의 군사, 관료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세력으로 성장했다고 인식하는 것은 과대표장된 것이다. 유능하고 경험 있는 관료의 충당이 어려웠고 치안을 담당할 경찰의 수급과 배치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반일 분위기로 인해 참여를 꺼리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대부분 모든 신생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치안과 안보문제에 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국토가 분단된 적대적 상태에서의 국가 형성의 경우 더욱 비중이 크다. 최소한의 치안과 안보가 보장된 이후, 시민사회가 출현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최종적으로 외부 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법체계를 바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의 위협 속에서 안보가 극도로 취약한 신생취약국가로서 힘들게 탄생되었다.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도 일본이나 서독에 비해 낮

2)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1950』 (미지북스, 2020), 247-248.

3) 위의 책, 145.

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하루빨리 철군하려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미국의 해외 원조도 한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 비해, 소련군정은 치밀하게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인민위원회 구성, 토지개혁, 북한군대 창설 등으로 북한을 대남진공의 전초 기지로 강화하면서 한반도 공산화 작업을 면밀하게 추진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갔고, 이에 반발한 남한의 좌익 남로당세력이 배후의 소련군정을 등에 업고, 무장폭동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정면으로 방해하였다. 반란의 명분은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통일정부의 수립이었다. 여기에서 통일정부란 공산화를 지향하는 통일정부를 일컫는다.

II.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남로당

1. 소련군정의 북조선 ‘민주기지화’

미군정이 2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서둘러서 건국 준비에 돌입했다면, 소련군정은 45년 9월 북한에 진주하면서 북한을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민주기지’로 삼아 치밀한 정치 공작을 진행시켜갔다. 북조선인민임시위원회가 1946년 2월에 결성되어, 위원장에 김일성을 앉히고 곧이어 토지개혁에 착수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공산당을 선전하면서 농민들의 환심을 사기에 바빴다.

이미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지도하에 1946년 1월 11일 최초의 군대로 창설된 철도보안대가 미군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찰대로 위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인 1946년 8월 15일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련군이 관여해 간부 장교 양성을 위한 보안간부훈련대대를 창설했다. 1947년 5월 17일, 소련은 보안간부훈련대대를 북조선 인민집단군사령부로 개칭한 후, 전 장병에게 소련군 계급장을 모방한 계급장을 수여하고 소련제 무기를 보급하여 정규군의 모습을 구체화했다.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에 이관하자, 소련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을 선포했다.⁴⁾

제주4·3사건이 발발하기 하루 전인 4월 2일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NSC 8' 보고서는 4만 5천 명의 소련군이 12만 5천 명의 북한 정규군을 양성하고 있는데, 남한의 경우, 불과 2만 명의 주한 미군이 2만 7천 명의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⁵⁾ 이렇게 남한의 미군정과 북한의 소련군정은 남북한에서 군대를 양성하는

4) 위의 책, 90-91.

5) 위의 책, 91에서 재인용.

관심도와 지원규모에서 확연히 큰 차이점이 있었다.

2. 박헌영의 남로당과 배후의 소련군정

지금은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깊게 드리우고 있지만, 1945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해방 정국과 건국 사이의 시기는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제외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소련군정은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서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까지 남한의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공산계열에 끊임없이 파업과 폭동지령을 내렸다. 즉 남한의 파업과 폭동은 자주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소련군정의 지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 태반이었다. 1946년 5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발생하자 미군정은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 체포령을 내린다. 9월 파업을 주도했던 공산당 지도부는 북한에 주둔 중이었던 소련군 사령부에 파업 방침을 문의했다. 9월 9일 박헌영의 문익에 쉬티코프 사령관은 200만 엔을 지원하고, 임금 인상,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미군정이 정간한 좌익신문들의 속간, 공산당 지도자에 대한 체포령 철회 등의 요구 조건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할 것을 지시했다.⁶⁾ 이것은 박헌영과 남로당 등 남한의 좌익세력들이 소련군정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예속되었는가를 잘 반증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소련군정의 영향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목은 남북한 공산당 창당에 소련군정이 깊이 개입한 사실이다. 1946년 7월, 남북한 양쪽에서 좌익세력의 새판짜기 헤쳐 모여가 시작됐다. 소련군정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산당 창당 작업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소련 군정의 지시 하에 북에서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을 합쳐 북조선노동당(북로당)을 창당하고, 남한에서는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을 한데 모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결성하는 작업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반대세력의 저항이 미미한 북한에서의 북로



박헌영

당 결성은 순조롭게 진행돼 8월 28일 창당됐지만, 남로당은 미군정의 탄압과 3당간의 이해관계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남한에서의 합당은 비밀리에 평양과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돌아온 박헌영이 인민당 당수 여운형에게 합당문제를 꺼내고, 여운형이 이에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합당을 계기로 내연해 온 조선공산당 내부의 갈등이 폭발해 반(反)박헌영파와 친(親)박헌영파로 갈라지고 인민당과 신민당도 이에 영향 받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합당은 물 건너가는 듯했다. 그러나 합당은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결국 소련의

6) 위의 책, 114.

개입으로 1946년 11월 23일부터 이틀간 결성대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남로당 출범이 확정됐다. 소련 군정을 등에 업은 박헌영이 승리한 것이다.⁷⁾

남한 내의 빨치산 부대 활동은 1946년 10월에 시작되었는데, 빨치산 부대의 존재는 소련 군정에게 향후 공산당의 행동 방침을 문의해 온 조선공산당의 보고를 통해 확인된다. 북에 있던 박헌영은 빨치산 부대의 식량과 탄약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향후 투쟁 방침에 대한 교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군정에 쫓겨서 도주한 좌익세력들 중 일부는 1948년 2월 7일 총파업과 제주4·3사건 이후 전라남도 곡성군과 구례군 일대에서 ‘야산대’로 불리는 무장 유격대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 야산대 중 일부가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후 군 정규 부대에서 전환한 유격대로 흡수되면서 본격적인 게릴라 활동이 시작된다.⁸⁾

III. 제주4·3사건의 배경: 유엔 결의 반대투쟁

1945년 8월 15일, 한국인들의 해방이 된 기쁨도 잠시 분단의 고통과 함께 1950년 6·25 전쟁까지 그야말로 한국은 내전상태에 있었다. 미군정, 이승만 박사, 그를 지지하는 국군과 경찰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대항하여 사사건건 건국을 방해하려는 궤방꾼 남로당과의 치열한 혈전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대표적 사건이 바로 제주4·3사건이었다. 무장폭동을 일으킨 제주도 남로도당은 1948년 4월 3일 자정을 기해 한라산 중턱을 중심으로 제주도 거의 전역에서 봉화를 올리고 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그 명분은 5·10총선거에 반대하여 소위 한반도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항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 민중들도 함께 저항했기에 ‘민중항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민중항쟁은 흔히 역사에서 마치 부패하고 민중을 억압하는 잘못된 공권력에 대항한 정의로운 민중의 항거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제주4·3사건이 유엔 결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촉발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⁹⁾

해방된 한국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으며, 임시정부의 구성안을 두고 미국과 소련군정이 크게 대립하여 1차 미소공위와 2차 미소공위가 모두 무산되었다. 이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으며, 1947년 11월 유엔 총회는 한반도 전역에서 유엔 감시 하에 자유총선을 실시하여 남북한 통일정부를 구성하라는 결의를

7) ‘역사속의 오늘’ 조선일보.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4/11/24/2004112477005.html (검색일, 2021.8.18).

8)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117.

9)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알기』 (대추나무, 2019), 116-118

채택하였다. 이에 반발한 소련과 남북한의 공산세력은 유엔 결의의 이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소련은 북한을 먼저 공산화해놓는 전략으로 북한을 ‘민주기지’로 삼아 차후에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공작을 진행해 왔는데 유엔 결의의 이행은 남한의 공산화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를 방지한다면 자칫 북한의 공산화마저도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다.

여기에서 나온 소련의 책략은 한국인들끼리 자주적으로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미소 양군 철수론이었다. 소련은 이를 통해 유엔 결의를 무력화하고 남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려고 시도했다. 북한지역에서는 1946년 2월부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단독정부가 출범해있었고, 북조선노동당(공산당)의 일당독재가 안정되게 실현되고 있었는데 반해, 남한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정부도 구성되지 못했고, 정치세력들이 좌익, 우익, 중도로 3분되어서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상태였기에,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 볼 때, 소련의 제안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는 조만간 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다. 교활한 소련은 이 점을 노린 것이다.

마침내 유엔 총회의 한국 결의가 채택되자, 소련은 남북한의 노동당에게 유엔 결의를 거부하고 소련이 제시한 방안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소련의 그런 지시에 따라 남북한의 공산세력은 좌익 통일전선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을 앞세워 남북한 각지에서 유엔 결의 거부와 소련 제안 수용을 주장하는 군중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좌익의 군중투쟁은 남한지역에서는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유엔 결의가 합리적이어서,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유엔은 소련과 남북한 공산세력의 반발을 무시하고, 유엔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1948년 1월초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서울로 파견했다. 서울에 온 유엔위원단이 유엔 결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자, 소련은 유엔위원단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파업, 폭동, 무장테러를 전개하라고 남로당에 지시했다. 소련의 지시에 따라 남로당은 2월 7일부터 남로당과 민전의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선도하에 전국 각지에서 유엔 결의 거부, 유엔위원단 추방, 남한지역 단독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파업, 맹휴, 집회, 시위 등을 전개했다. 더욱이 무장한 좌익 인민유격대들은 경찰관서 습격, 전신, 전화선 절단, 철도 시설 파괴 등을 자행했다.

좌익세력은 그 투쟁을 ‘2·7구국투쟁’으로 작명했다. 유엔 결의가 이행되면 한반도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조국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구국투쟁’이라 명명한 것이다. 투쟁 개시일을 2월 7일로 잡은 이유는 소련과 남북한 좌익이 유엔 결의를 격렬하게 반대한 상황에 직면하여, 유엔 결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유엔위원단이 유엔 소총회에 요청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다.

좌익세력의 2·7투쟁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유엔 소총회는 소련과 남한 좌익세력의 반대투쟁을 무시하고, 2월 26일 유엔 결의를 이행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행하라고 결의하였다. 유엔 소총회의 결의는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독립정부를 구성하라는 것이었다.

유엔 소총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남로당과 민전은 유엔 소총회의 결의를 ‘남조선을 식민지화, 군사기지화하려는 미제의 노골적인 단독정부 수립계획’이라고 비난하면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선거를 물리적인 힘으로 저지, 파탄내기 위해 무장투쟁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한마디로, 제주4·3폭동은 1947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된 남로당과 기타 좌익분자들의 유엔 결의 및 남한 선거 저지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7년 11월부터 시작된 유엔 결의 반대투쟁에 참여했으나, 강도 높은 투쟁은 전개하지 못했다. 전단지 살포, 소규모 시위, 경찰지서 습격 등에 그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경찰과 우익 청년단체들의 남로당에 대한 조직파괴 공세로 인해 많은 수의 남로당원들이 구속되어 남로당 제주도당의 투쟁 역량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군정은 유엔 결의에 따른 남한의 선거를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하기 위해 1948년 3월 정치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그로 인해 경찰서와 형무소에 구금되어있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당원들이 거의 모두 석방되어 당 조직으로 복귀했으며, 제주도당의 투쟁 역량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말았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비밀리에 인민유격대와 자위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총기와 수류탄 및 죽창으로 무장시켰다. 이것은 선거를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 공산분자들에게 관용을 베푼 미군정의 선의를 좌익세력은 선거를 저지, 파탄 내는 무장투쟁의 준비에 악용했음을 의미한다.

IV. 제주4·3사건의 6대 쟁점들

한국의 국토 남단에 자리 잡은 따뜻한 섬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한라산 기슭에 있는 여러 오름(岳)에서 봉화가 올랐다. 이를 계기로 무장한 남로당 인민유격대는 도내 12곳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하였고, 5·10선거 관계자들을 비롯한 우익단체 인사와 그들의 가족을 테러하는 피의 반란을 일으켰다. 이후 계속되는 선거 방해로 북제주 2개 선거구가 투표자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되었고, 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고, 11연대 좌익 장병 41명을 탈영시켜 대정지서 경찰을 살해하는 등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 이후 폭동이 진압된 듯했으나, 8월 2일 김달삼이 이북으로 간 후 이덕구가 제주인민 해방군 총사령관이 되어 다시 경찰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자 정부에서는 10월 11일 경비사령부를 신설하고 폭동진압에 나섰다. 11월 2일 9연대 6중대를 제주인민군이 공격하여 하루에 국군 14명 외 다수가 전사하는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11월 17일 제주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폭동을 주도한 남로당의 單選(단선) 單政(단정) 반대 투쟁은 제주에서만 선거 방해의 성공을 거두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이 전면 개방된 이후에도 한라산에는 남로당의 최후의 폭도들이 여전히 활약하고 있었다. 4·3폭동은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빨치산 오원권이 체포됨으로써 만 9년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오늘날 좌익운동권들은 4·3사건을 자주적 통일정부 구성을 위해 몸부림치며 희생당한 민중항쟁으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사 교재에서도 그렇게 기술되어있다. 그러나 정작 4·3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제주 남로도당의 배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여 역사적 왜곡이 장기화되고 있다. 2021년 KBS제주방송의 다큐 ‘암살 1948’도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인물들(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을 마치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경우와 비교하여 ‘의인’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해방 정국에서 6·25전쟁 시까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소련 스탈린의 야욕과 그의 충견노릇을 마다하지 않은 남로당의 활동을 제외한다면, 남한지역에서의 무수한 폭동과 반란행위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4·3사건을 6대 쟁점으로 나누어 재검토해보고, 이를 토대로 좌익운동권들이 주장하는 허구를 지적하고 역사적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다가서 보려 한다.

1. 4·3사건의 성격 논쟁

제주4·3사건의 성격규정은 논자에 따라 폭동, 반란, 민중항쟁, 인민무장투쟁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은 논자의 입장, 시각, 역사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제주4·3사건 발발 초기에는 폭동론이,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에는 반란론이 우세하였다. 정부는 사건 발발 초기에는 4·3사건을 폭동으로 보도하다가, 정부수립 이후인 11월 17일의 계엄령 선포 시에는 선포문에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로 표현함으로써 ‘반란’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 ‘광주 5.18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제주4·3사건은 ‘민중봉기’ ‘민중항쟁’으로 불리어지기 시작하였다.¹⁰⁾

폭동론의 경우, 주체를 남로당으로 지목하고, 원인을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설정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남로당의 극좌모험주의적 도발(폭동)로 규정한다.

반란론은 주체를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서 우익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항한 좌익의

10)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 475.

반란으로 규정함으로써 4·3의 본질을 좌우익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파악한다.

인민무장투쟁론은 주로 공산주의적 관점에서의 입장으로 주체를 ‘남로당과 인민’으로 설정하고 인민의 반(반)제국주의 무장투쟁으로 규정하여 그 배경으로 미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 인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민중항쟁론은 위의 3가지 관점과 본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르다. 이 관점은 주체를 ‘민중’으로 설정하며, 제주 4·3사건을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이며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자주적 항쟁으로 규정한다. 남로당은 부차적 존재로 파악된다. 민중항쟁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민항쟁론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갖는다. 양자 모두 남로당과 민중 또는 인민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前者(전자)가 사실상 ‘민중’을 주체로 보는데 반해, 後者(후자)는 남로당을 주체로 보되 인민과 남로당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후자가 ‘제국주의와의 대결’로 규정하는 반면에 전자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후자가 봉기목적으로서 ‘인민정부 수립’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전자는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은 채 ‘통일(단선단정 반대)’을 내세운다는 점이 중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제주4·3사건의 성격 규정은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한다. 그렇다면, 제주 4·3사건을 ‘민중항쟁’이나 ‘인민항쟁론’으로 보는 해석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즉 ‘5·10총선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민중이든지 인민이든지 이들은 남로당에 의해 조직화되고 동원된, 철저하게 이용된 대상이었을 뿐이다. 한마디로, 제주4·3사건의 주체는 민중도 아니고 인민도 아닌 ‘남로당’이었다.

남로당 중앙당은 제주도당에게 최초에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의원 선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폭동 지령을 내렸다가 그 후 울구¹²⁾를 통해 경비대 동원을 명령했고, 남로당 제주도당은 장기간 군경을 상대로 전투하면서 친정부 인사들과 경찰 가족을 살해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를 게양했고, 대정부 선전포고를 했으며, 국군과 장기간 치열한 전투를 했고, 제주도를 무력으로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 했으며, 나아가 육지에서의 무장봉기로 육지가 혼란해지면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적화통일을 하려 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제주4·3사건의 성격은 폭동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한 반란인 것이다.¹³⁾

11) 조남현, 『제주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1993), 191-193.

12) 조직지도원 (오르그)

13)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 481.

2. 제주남로당의 무장폭동의 목적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폭동은 우발적이고 제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전면적이었다. 이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나 최소한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감행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또 남로당이 봉화를 올린 것은 단순히 '단선단정 반대'를 위한 것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남로당이 '단선단정 반대'를 통해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나?

더욱이 4·3사건이 발생할 당시 이미 남로당은 총수 박헌영이 북으로 피신하는 등 합법공간에서의 입지를 사실상 상실하고 있었고,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건국될 경우, 남로당은 완전히 근거지를 잃게 될 상황이었다. 결국 결사적으로 남한 지역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즉 남로당의 단선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투쟁은 공산체제 건설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남로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남로당이 공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3·1기념식, 나아가 4·3사건을 일으킨 점은 다음과 같은 지침서에서도 확인된다.

「선전선동 요강」

첫째로, 3·1운동의 원인, 진행, 의의, 교훈 등을 명확하게 해설하여 선전선동할 것. 곧 국제적으로 민족자결주의의 타협노선과 위대한 소련 10월 혁명에 의한 혁명노선의 영향. 국제적으로 일제의 병합 이래의 극악한 반동정책, 노예정책이 이 3·1운동의 원인이 된 것....

둘째로, 우리는 3·1기념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당의 기본 노선에 결부시켜 광범히 선전선동할 것. 곧 위대한 10월 인민항쟁과 북조선 민주건설이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에 정권을 넘기고 인민공화국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는 것. 민주세력의 기본역량은 노동자, 농민, 근로지식인이라는 것¹⁴⁾(후략).

이 문건에서 나타났듯이, 남로당이 추구한 것은 소련의 10월 혁명 전통에 따른 '북조선식 민주건설'이었고 이것은 곧 공산주의 체제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남로당은 제주도에 봉기하면 남한 각지에서 이에 호응하여 또 다른 봉기가 잇따르고 결국에는 북에서 밀고 내려올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런 예측은 부분적으로는 맞아 떨어졌다. 여수와 순천에서의 14연대 반란사건과 김일성의 6·25남침이 바로 그것들이다.

14) 남로당문건 (1947.2.21.),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1991), 12.

3. 중앙당 지령이 없었나?

제주4·3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나? 아니면 남로당 중앙당이나 평양이나 모스크바에서 내린 지령에 연계되었는가의 여부이다. 과거에는 제주도당 차원에서 벌인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점차 중앙당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중앙당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 박갑동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중앙당이 제주도를 폭동 장소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중앙당의 폭동지령이 떨어졌다. 아마도 그 지령은 3월 중순 쯤에 현지의 무장행동대 두목 김달삼에게 시달된 것으로 안다. 이에 따라 김달삼은 자기 부하 조몽구와 국방경비대 안에서 밀령을 받고 있던 문상길 중위 등과 밀회하여 치밀하게 폭동계획을 짰던 것이다¹⁵⁾ (중략).”

그러나 박갑동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나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것이 허점이었다. 고창훈은 『4·3 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에서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회가 단선·단전 반대의 전국적 맥락과 결합시켜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려 감행하였고, 감행이후 도당대회서 의견조정을 거쳐 중앙당에 보고하였고, 중앙당은 이를 조정함과 동시에 전남당부 조직지도원(남도 울구)을 파견하여 지도하였다”고 주장한다.¹⁶⁾ 특히 고창훈은 4월 20일 평양대회에서도 제주도의 상황과 4·3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4·3봉기가 중앙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에 북로당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 때이지만 여전히 김일성과 박헌영은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은 박헌영의 입장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김일성으로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아예 회피했을 개연성이 크다. 오히려 김일성은 박헌영이 주도한 남반부의 봉기가 실패하기를 내심으로는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김달삼의 급격한 부상도 중앙당의 개입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달삼이 제주도당을 주도한 것은 4·3을 전후해서의 일이다. 하위직의 강경파인 김달삼과 이덕구 등이 상위직인 온건파 안세훈, 조몽구, 김유환 등의 무장투쟁 반대를 제치고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중앙당의 개입 없이는 이해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제주4·3폭동은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해 발발했고, 인민무장투쟁의 총지휘는 현지의 제주당위원회 통제 하에 군사부책들인 김달삼, 이덕구, 김성규 등이 담당했으며, 인민해방군(빨치산)의 무장은 일본군이 지하에 매장하여 버리고 간 총기와 탄약 등을 발굴하여 충당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증언이 다시 나왔다. 제주폭동 당시 인민해방군 제2연대장 출신

15) 박갑동, 『박헌영-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 (인간사, 1983), 198.

16) 고창훈, 『4·3 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2006), 277-278.

으로 일본에 망명한 김봉현¹⁷⁾이 일본의 문예잡지 『민도(民濤)』(1988년 여름호 특집II)와의 인터뷰에서 무장투쟁의 지도부에 대해 새로운 증언을 했다. 즉 당시 제주도 인민해방군을 지도한 군사부는 도당위원회의 상부에 위치한 특별기구였고, 이 군사부를 지도한 사람은 중앙에서 파견된 조직책 千檢山(천검산)이라는 인물로 군사이론에 탁월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제주도당의 전 조직이 천검산의 지도하에 있었다고 한다.¹⁸⁾ 그렇다면 북로당이나 소련 군정기관 이외는 달리 지목할 데가 없다.

결정적 자료로서는 김봉현과 김민주가 공편한 『제주도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 의하면, “박헌영 리승협 도당의 그릇된 전략과 전술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방향으로 오도되었다....그들의 졸당(卒黨)인 김달삼 강규찬은 아무런 승산도 없는 지시를 받아가면서...”¹⁹⁾라는 기록은 박헌영과 리승협 등 중앙당의 지령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기록이다.

요약해 보면, 공산당에 있어서 하부조직이 상부조직의 노선에 위배하여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것도 全面戰(전면전)을 고려한 무장투쟁을 결행하는데 있어서 제주도당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로당 하부조직으로서의 제주도당은 그 정치노선과 전술노선에 있어서 중앙당 노선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해 있을 수는 없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중앙당의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제주의 4·3무장봉기 시에 다른 육지 지역에서 호응이 없었나?’에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4·3사건을 일으켰다고 해도 형편상 전국적인 봉기로서의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이 5·10총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폭동 지령’을 내려 발발하였는데, 중앙당은 폭동 지령을 제주4·3 발발 이전에 문서와 구두로 내렸고, 한번은 울구를 통해 ‘폭동에 경비대를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3번이나 폭동 지령을 내렸다.

(1) 문서 지령으로 남로당 중앙당은 제주도당에게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켜라. 경찰간부와 고위관리들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노획하라. 총선거와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렸다.²⁰⁾ 폭동 지령문이 1월 22일과 2월 12일 등 두 번이나 압수된 것으로 보아 남로당은 폭동지령을 두 번 이상 문건으로 지시하였음이 드러났다.

(2) 구두지령은 2·7폭동이 큰 성과 없이 끝나자 남로당 중앙당은 2월 중순에 이재복을 제주도에 보내²¹⁾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장 김달삼에게 “UN에 의한 자유선거가 실시되면 우익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는 설자리가 없어진다. 제주도에 폭동을 일으켜서 단선반대투쟁을

17) 조총련 오사카지부 서열 4위, 『조선일보』 A19, 2003.6.17.

18) 조남현, 『제주4·3사건의 쟁점과 진실』, 246-247.

19) 김봉현, 김민주, 공편, 『제주도민들의 4·3무장투쟁사』(1963.12.15), 164.

20)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 105.

21) 이재복을 안내하였던 조경순(여.순반란사건의 지휘자 김지회의 처)을 취조했던 빈철현은 2·7폭동이 실패하자 남로당 중앙당은 조직이 온존한 제주도에 단선반대투쟁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재복을 파견했다고 했다.

강력히 전개하라”는 구두지령을 내렸다.

(3) 올구를 통한 지령은 전남 파견 올구가 2월 말에 제주도를 떠났다가 복귀하여 3월 15일의 회의시 “國警(국경)프락치는 도당에서 지도할 수 있으며, 이번의 무장 반격에 이것(경비대)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고²²⁾ 지시하였다. 이 지시도 올구가 남로당 중앙당을 방문하고 나온 것으로 보아 중앙당의 지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지령이 내린 것으로 연계되었는가에 대한 비밀자료도 공개가 되었기에 부정할 사안이 아니다. 1993년에 소련의 비밀 문건 해제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소련의 스탈린이 1945년 9월 20일자로 “북한에 단독정부를 구성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 그리고 이 지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던 평양 주둔 소련군 정치담당 부사령관 쉬티코프의 일기 형식으로 된 비망록에 따르면, 소련군정이 김일성의 북로당과 박헌영의 남로당을 완전히 장악했던 실상이 나타나 있으며 1946년 9월의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시, 남로당 당수 박헌영에게 200만 엔과 300만 엔의 공작금까지 제공하며 투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특히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을 앞두고 박헌영이 “당(黨)이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문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쉬티코프는 “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주4·3사건이 박헌영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²³⁾

4. 부풀려진 피해자 수치

4·3폭동 피해자의 숫자는 1949년 3월 4일자 연합신문에서 처음 발표되었다고 알려진다. 신상준의 <제주도 4·3사건>에는 그동안 피해자 상황을 발표했던 자료가 일목요원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동안 발표된 사망자 숫자는 다음과 같다.

- ① 1949년 3월 4일자 연합신문 : 19,900명
- ② 1949년 9월 1일자 서울신문 : 29,720명
- ③ 1949년 4월 1일 미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 일일보고서 : 14,000 ~ 15,000명
- ④ 1949년 4월 7일 신성모 국방부장관 기자회견 : 1,668명
- ⑤ 1950년 1월 19일자 자유신문 : 3,240명
- ⑥ 1950년 1월 ‘근로자’ 이승엽 기고문 : 3만
- ⑦ 1950년 7월 ‘인민’ 이기석 기고문 : 3만

22)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대림인쇄사, 1995), 76.

2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2/2018040200117.html> (검색일, 2019.6.13).

- ⑧ 1951년 1월 6일 국회 제7차 회의 허정 사회부장관 보고 : 5만
- ⑨ 1951년 1월 23일 국회 13차 회의 강경옥 국회의원 질문 : 5만
- ⑩ 1953년 제주도청 발간 ‘제주도세 요람’ : 27,719명
- ⑪ 1957년 4월 3일 제주신보 : 공비 사살 7,893명, 공비에게 참살당한 양민 1,300명
- ⑫ 1960년 국회 양민 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사망자 1,878명
- ⑬ 1989년 월간 관광제주 : 공비에게 살해된 수 1,288명, 진압과정에서 살해된 수 6,750명/
합계 8,033명
- ⑭ 1995년 제주도4·3피해 1차 조사보고서 : 사망 8,679명, 행불 1,041명, 형무소 행불
870명/ 합계 10,581명(가해자 토벌대 8,909명, 무장대 1,065명, 기타 141명, 분류불
능 466명)
- ⑮ 1997년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 - 수정보완판 : 사망 9,361명, 행불 1,346명, 형무
소 행불 958명/ 합계 11,665명(가해자 토벌대 9,674명, 무장대 1,314명, 기타 164명,
분류불능 513명)
- ⑯ 2000년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 - 2차 수정보완판 : 합계 12,243명
- ⑰ 2003년 4·3중앙위원회 백서 : 사망자 10,156명, 행불 3,718명, 후유장애자 204명, 수
형자 244명/ 합계 14,322명.²⁴⁾

위 수치를 보면, ④, ⑤, ⑪, ⑫, ⑬번 등을 제외한 번호는 모두 1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4·3사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제주신보가 조사한 ⑩번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4·3사건의 사망자 숫자는 8~9천 명 근처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4·3중앙위원회가 14년간의 접수 끝에 발표한 사망자 숫자는 10,344명인데 전자와 비교하면 약 1~2천 명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불량위패가 끼어든 시대상황상의 오차로 볼 수 있다. 이 오차는 희생자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 불량희생자이거나 아직 생존한 자이거나, 아니면 보상을 노린 가짜 희생자일 수도 있다.

5. 김익렬 寄稿(기고)와 遺稿(유고)의 진실 논란

4·3사건의 진실 공방전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심각한 부분이 바로 김익렬 중령의 증언이 담긴 그가 남기고 간 기고와 유고의 진실성 여부이다. 김익렬 중령이 4·3폭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김달삼과 소위 ‘4.28평화회담’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4.28평화협상’은 회유나 진압이나의 분수령이었으며, 결국 4·3폭동이 유혈로 치달았다는 점에서 김익렬은 4·3폭동의 책임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의 부하들은 그에게 ‘평화주의

24) 김동일, 『제주 4·3사건의 거짓과 진실』, 324-333.

자'라는 간판을 달아주었으나, 그의 후임 박진경 연대장을 한 달 만에 암살하고 말았다. 박진경 연대장이 암살당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 열심히 폭동 진압에 나섰다는 것 뿐이다.²⁵⁾

김익렬 중령이 직위 해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익렬의 유고에 따르면, 조병옥이 그의 부친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면서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조병옥은 독립운동가요 미국유학파로서 해방 정국에서 뛰어난 통찰력으로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꿰뚫고 있었던 선각자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조병옥은



제주 비행장에 도착한 미군정 수뇌부. 왼쪽 두 번째부터 군정장관 딘 소장, 통역관, 유해진 제주도지사, 맨스필드 제주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송호성 총사령관, 조병옥 경무부장, 김익렬 9연대장, 최천 제주경찰감찰청장. 이날 제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조병옥 경무부장과 김익렬 연대장 사이에 옥탄전이 벌어졌다. (1948.5.5.)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좌익들의 저항을 분쇄하는데 앞장서서 국가의 초석을 놓은 지대한 공로자이다. 이런 인물이 김익렬의 부친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면서 거짓말로 인신공격을 했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조병옥은 남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총수로서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만약 조병옥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김익렬로서는 반론을 제기하여 조병옥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몸싸움을 하다가 상황이 정리된 이후, 딘 장군의 요청으로 조병옥은 다시 단상에 올라가 김익렬이 공산주의자라는 설명을 했다. 김익렬은 조병옥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그는 조병옥의 연설이 끝난 후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김익렬은 조병옥의 연설을 방해하는 행

25) 위의 책, 145-147.

동을 보였고 김익렬은 상당한 궁지에 몰렸다. 김익렬의 유고에서는 조병옥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에게 불리한 부분이길래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것이다. 더구나 김익렬과 김달삼은 친구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 김익렬이 언제 친구 김달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익렬은 말년에 4·3폭동 당시 협상장에서 만났던 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복지산 학교의 친구였다고 떠벌리고 다녔다.²⁶⁾

김익렬은 유고를 쓰기 이전인 1948년 8월 6일 국제신문에 김달삼과의 협상에 대한 기고를 했다. 그리고 유고는 1970년대에 작성되어 1988년 12월 김익렬이 사망한 이후 발표되었다. 즉 김달삼과의 협상내용은 기고와 유고라는 두 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상이한 점이 많길래,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개의 발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하길래, 그것들은 진술을 무수하게 반복하였기에 후세의 독자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김익렬은 변명과 거짓말을 많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김익렬에 대한 진실 공방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기고와 유고의 집필 동기도 상이하다. 기고의 목적은 “인민군사령의 정체에 대해 전투 지휘가 상당히 능하느니 하는 사실 아니 사실에 불만을 느끼고 그릇된 선전을 시정하려는 의미에서” 라고 하는 반면에, 유고의 목적은 “사가들이 맹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을 공산당의 사전 음모에 의한 우리나라 공산화를 위한 여순, 지리산 등지의 공산반란과 같은 사건으로 단정짓기에 후세 사가들이나 제주도민들이 정확한 역사를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²⁷⁾

기고와 유고의 관점이 다르기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만큼 김익렬은 거짓말을 많이 한 것이다. 특히 김익렬의 유고는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4·3폭동에서 좌익들이 숭상하는 중요 문건이다. 4·3정부보고서에서도 유고는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3폭동의 유형은 협상이 파기되었기 때문이고, 협상 파기의 주범은 경찰과 우익이라는 논리다. 4.28평화회담은 점차 미화되고 윤색되어서 김익렬을 평화의 화신으로 만들었다. 후대의 남한 좌익들이 4·3폭동에 대해 대한민국과 우익진영을 매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김익렬의 왜곡에서 출발한다. 김익렬은 평화를 주창하고, 성사시켰는데, 폭력적 정권이 일부러 강경진압을 감행하여 희생자를 양산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성사된 평화회담은 존재하지 않았다.²⁸⁾

26) 더 자세한 내용은 김동일, 위의 책, 165-173.

27) 김동일, 위의 책, 175. 기고와 유고의 상이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김동길, 위의 책, 174-183.

28) 김익렬의 평화회담의 허구성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김동일, 『제주4·3사건의 거짓과 진실』, 184-191 참조.

6. 단정 수립의 정치적 책임론

한마디로 제주4·3폭동을 일으킨 주동자들의 봉기 동기는 미군정이 협조하고 이승만이 강력하게 주장한 5·10총선거를 통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의 노선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정부를 이루지 못한 남북분단이 이승만의 책임인가? 과연 남북한 누가 먼저 단독정부를 재촉했던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점령하여 각각 군정을 실시하였다. 소련은 이미 북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결심을 굳혔다. 9월 20일 스탈린은 북한에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라는 취지의 비밀지령을 제1극동군 사령관 바실레프스키에 내렸다. 그에 따라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북5도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산하에 이북5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10개 행정국이 창설되었다. 그와 동시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립되어 오늘날 조선노동당의 전신이 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며 장차 한반도에 들어설 임시정부의 수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소련은 그 이전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토지개혁 등의 사회개혁을 추진하여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지시하였다. 김일성은 소련군이 점령한 38도선 이북에서 혁명을 먼저 수행하여 북한을 '민주기지'로 만든 후에 한반도 전체로 혁명을 확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방침 하에 1946년 2월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한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을 골자로 한 공산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무상으로 분배된 토지에 대해 농민은 경작권을 가졌지만, 소유권은 없었다. 그럼에도 토지개혁은 농민의 환영을 받았다.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통한 북한의 급진적인 개혁은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남한의 미군정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인해 남북한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토지개혁을 시행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사실상 북한지역을 통치하는 단독정부의 행세를 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도·시·군 인민위원 선거를 거쳐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정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훨씬 전에 이미 단독정부를 세운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²⁹⁾

북한지역에서 이미 단독정부 수립이 한창 추진되고 있던 1946년 남한은 신탁통치문제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남한은 일본이 항복했으나, 미군은 아직 진주

29) 교과서포럼, 『한국현대사』 (기파랑, 2008), 181-182.

하지 않은 힘의 공백 상태에 있었다. 이런 공백을 선점한 것은 건국준비위원회와 세력을 결집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9월 8일,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정은 어떤 조직의 정부형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38도선 이남에서는 미군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일정기간동안 한반도에서 신탁통치를 결정했지만, 그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 미국과 소련은 냉전에 돌입했으며, 양국 간 협력의 여지는 처음부터 적었다. 1946년 3월부터 5월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를 말해 준다.

이에 미군정은 김규식과 여운형 등 온건한 중간파 세력이 결집하도록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하였다. 현실적으로 해방공간에서 중간파 세력이 크지 않았기에 좌우합작이 성공할 가능성은 적었다. 북한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 책략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1946년 전국을 순회강연하면서 소련 공산주의 책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단독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읍발언은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국내적으로는 이미 북한에서 사실상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서도 불가피하게 그에 준하는 대응책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북한지역을 공산화하고 있는 소련에 맞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해 12월 4일, 이승만은 급기야 도미 여정에 올랐으며, 자신이 직접 미국정부를 설득하여 남한만이라도 정부수립(건국)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결심하였다.

이승만이 대미외교에 전념하고 있던 그 당시의 국제정세는 1947년 3월에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이 밝혔듯이 이승만의 정세판단이 정확했음을 입증한다. 트루먼독트린은 미국이 소련과의 대화나 협조적인 자세를 버리고 대소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세력의 위협에 직면하여 소련의 세계적화 전략에 맞선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책이었다.

신탁통치를 논의하고자 1947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겼다. 그해 11월 유엔은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며, 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남한에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 1948년 1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왔다. 그러나 소련의 거부로 북한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2월, 유엔은 “선거감시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군정은 이를 수용하여, 그해 5월 10일 남한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결국 정리해보면, 분단의 책임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냉전체제에 있었으며, 미소 양국에게 일단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태의 진척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1차적인 책임은 소련 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북한 점령시기 처음부터 공산화 작업에 착수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지배권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분단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만약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추진되지 않은 채 계속 시간만 지체되었다면, 미군정의 갈팡질팡하는 한반도 정책의

와중에서 결국 한반도는 미군이 철수한 이후 강력한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좌우합작의 연립정부가 수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었다면 남한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제주4·3사건의 폭동 주동자들이 주장한 “공산화라도 통일정부면 무조건 찬성한다”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이승만의 단독정부 요구는 시대적 상황으로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남로당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공산주의 이념의 실체도 제대로 모른 채 4·3사건의 流血(유혈)의 회오리바람에 휩쓸린 제주도 민중들은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다. 물론 억울하게 죽어갔던 제주도민들의 희생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군경 토벌대의 강경진압을 문제 삼기 전에 먼저 건국을 무장폭동으로 방해한 남로당의 반란행위를 준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반란행위가 역사적 평가에서든지, 어떤 법적인 방식으로든지 평화나 상생이란 미사여구로 미화, 찬양, 정당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V. 결 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3년 만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그로부터 어언 73년이 지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국가가 탄생되었지만, 대한민국처럼 단기간에 건국-산업화-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 산업화 과정만 하더라도 100년 가까이 걸렸다는 점에서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취의 발자취에는 건국의 과정에서 흘린 선열들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특히 국군, 경찰, 또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을 위시한 애국지사들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광풍 이후 해이해진 좌경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건국의 선각자들의 피와 눈물의 삶의 궤적을 망각하고 말았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건국사를 망각해버린 생각 없는 국민이 된 것이 아닐까?

1948년 건국 당시 대한민국은 자원과 물자, 그리고 국가경영의 인재 등 모든 것이 부족한 그야말로 신생취약국가였기에,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국가였다. 미군정도 하루빨리 철수하기를 원했고, 미 전략가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서독과 일본에 비해 형편없이 저평가되었던 시절이었다. 미군정은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위가 무기한 연기되자 소련과의 좌우합작 정부 구성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작업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군대와 경찰조직이 증강되고 미국의 원조가 강화되었으나, 소련의 북조선에 대한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과 비교해 보면 빈약했다.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그야말로 신생취약국가였다.

특히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계열은 파업, 폭동 등으로 사사건건 건국을 방해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극적 사건이 바로 제주4·3사건이었다. 제주4·3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내부의 남로당 프락치 존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숙군작업에 들어갔으며, 다행스럽게도 이 숙군작업으로 6·25 전쟁 시 군내부의 혼란을 겪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좌익의 선전선동에 본의 아니게 동조하여 억울하게 죽어갔던 민중들의 낮은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폭동과 반역의 주동자인 남로당원들에게 철저히 그 과오와 책임을 물어야 하는 냉정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자주적 통일정부의 구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무장투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적 조국은 소련이었고, 스탈린에 충성을 맹세한 스탈린주의자였다는 점에서 일말의 동정심도 표할 수 없다.

건국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제주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정립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크게 연관이 있다. 오늘날 날로 훼손되어가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고려해 볼 때, 제주4·3특별법 통과에서 보듯이 제주4·3사건의 역사 왜곡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건국이념을 더욱 훼손, 침해할 것이고, 건국의 정통성이 부정되면서 건국에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분들의 노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되었지만, 제주4·3사건은 역사적 성격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던 무장폭동의 반란이었음이 명백하다. 4·3폭동의 주체 세력은 문맹의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신념을 가진 상당한 지식층들이었다. 이들의 선언문이나 폭동의 행동거취들은 4·3폭동이 경찰이나 서청의 탄압에 저항하여 일으킨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위한 신념의 폭동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투쟁방식도 단순히 경찰을 공격한 것을 넘어서서 군사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에 저항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확실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호도하면서 마치 공권력이 죄가 없는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것처럼 오도되어왔다는 점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좌익정부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내동댕이치고,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려고 했다. 역사적 문제를 학자들이 연구와 토의를 거쳐 학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표심을 의식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힘이나 다수결로 해결하려는 무모함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해방 정국에서 시작된 좌익과 우익의 갈등, 투쟁은 7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 양상은 역사학을 비롯하여 전 문화현상으로까지 확대되어가는 역사전쟁의 광역화 현상이 도처에서 목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왔던 체제수호세력은 역사전쟁에서 패하는 상황에 있다. 어느 여당 대선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친일파

와 미군정이 세운 나라”라는 식으로 반일선동의 역사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하면서 지지층을 긁어모으려고 광분했다. 대중의 반일정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책략은 선거철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면서 국익의 훼손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대중의 표심을 자극한다. 제주4·3사건특별법의 통과를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시민단체와 애국지사들이 앞장서서 역사의 좌경화를 막고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문승, 『제주사람들의 설움』, 신아문화사, 1991.
교과서포럼, 『한국현대사』, 기파랑, 2008.
김동일, 『제주 4·3사건의 거짓과 진실』, 비봉, 2016.
김봉현, 김민주, 『제주도민들의 4·3무장투쟁사』, 문우사, 1963.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 아성사, 2013.
문창송(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대림인쇄사, 1995.
박갑동, 『박헌영-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 인간사, 1983.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 알기』, 대추나무, 2019.
이선교, 『제주 4·3사건의 진상』, 현대사포럼, 2010, 5판.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1950』, 미지박스, 2020.
조남현, 『제주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1993.

2. 논문

- 고창훈, 『4·3 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2006.
남로당문건(1947.2.21.),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3. 인터넷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4/11/24/2004112477005.html.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2/2018040200117.html>

6·25와 사상전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6·25와 사상전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I. 문제 제기

6·25전쟁은 세계 전쟁사 중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가장 많았던 전쟁이었다. 군인들의 전사자도 많았지만 전선이 아닌 후방 마을의 개울가, 우물, 방공호 등 곳곳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의 시신들이 집단적으로 발견되었다. 군인들이야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수많은 전사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투도 없었던 후방 마을 곳곳에서 그렇게 많은 시신이 발견된 것일까? 누구의 시신일까? 누가 죽인 것일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는 6·25전쟁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없고, 전쟁의 반쪽만 아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6·25전쟁에 대해 주로 ‘군사적 충돌 측면’에서만 이해해 왔다. 학교에서도 북한의 남침, 유엔군 참전, 낙동강 전투, 인천상륙작전, 38선 통과 북진, 중공 참전,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1·4후퇴, 휴전 등을 주로 가르쳤다. 그러다 보니 6·25전쟁의 ‘사상적 측면’(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간의 사상·체제 전쟁)이 지나치게 소홀히 취급되어왔다.

사상사적 측면에서 6·25전쟁을 정의하면, 공산주의체제인 북한이 소련과 중공(중국 공산당)의 지원 아래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대한민국을 적화(공산화)하기 위해 일으킨 체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사상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체제’라고 부르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 등을 착취하는 나쁜 체제’라고 혐오한다. 또한, 자본가, 지주 등 부자들과 경찰, 군인, 우익인사 등 반공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세력을 ‘반동분자’라고 매도하면서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러시아나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 동아시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공산화하는 과정에서도 ‘반동분자 숙청’이라는 명분으로 부자들(자본가, 지주 등)과 반공세력을 학살하는 일이 공통적으로 일어났다.

6·25전쟁도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남한의 반동분자들을 제거하고 인민들을 해방해야 한다’라는 공산주의 관념에 따라 일으킨 전쟁이었다. 따라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을 때 지주, 자본가, 경찰, 공무원, 민간우익 등 우익세력들을 학살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었다. 실제 김일성, 박헌영 등은 전쟁 발발 당시 남한 내에 있는 좌익세력의 도움을 받아 반동분자를 숙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Joseph V.

Stalin)에게 남침 전쟁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때 그는 서울만 점령하면 20만 남로당원 등 좌익세력의 협조를 받아 손쉽게 공산화할 수 있다고 스탈린을 설득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군이 남한 각 지역을 점령했을 때 남한 좌익분자들과 합세하여 우익 민간인들을 살생부에 따라 체포, 인민재판이나 무단으로 학살했다. 인천상륙작전(1950.9.15)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군은 후퇴하면서 그간 체포해 두었던 민간우익인사들을 집단학살하고 후퇴했다.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되찾은 것은 인천상륙작전 13일만인 9월 28일이었는데, 이즈음 북한군은 각지에서 자행하던 집단학살을 멈추고 재빨리 북으로 후퇴했다. 북한군이 후퇴하자, 그간 북한군을 도왔던 남한 좌익분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인근 산으로 피신, 빨치산이 되어 지역주민들 중 자신들을 고발할 위험성이 있는 기독교인, 우익인사들의 가족 등을 집단학살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6·25전쟁 때 후방마을에서 일어난 잔혹한 민간학살극의 주체는 남한 마을을 점령했던 북한군과 이에 앞잡이 노릇을 한 남한 좌익분자들이었다. 북한군이 마을에 내려오자, 각 마을에 있던 좌익분자들은 북한군을 환영한 후 합세해, 완장을 차고 북한 앞잡이로서 반공세력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다. 그간 한마을에 살던 이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마을에 나타나자, 돌변하여 북한군과 합세한 것이다. 6·25전쟁을 겪은 분들이 한결같이 좌파사상을 가진 이웃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북한군이 내려오는 등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돌변하여 북한군과 한편이 되어 우익주민들을 죽이는 악마로 돌변하더라는 것이다.

북한군 점령기간(1950.6월말-9월말)에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들에 의해 일어난 학살, 북한군 후퇴 직후에 남한 좌익분자들에 의해 일어났던 민간인 집단학살극은 너무나 참혹하고, 그 규모도 크다. 학살의 규모는 자료들에 따라 다른데, 6만여 명, 12만여 명, 16만여 명 등 다양한 자료와 주장이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나 미군이 주로 했고, 좌익은 피해를 입은 세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이는 좌파진영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일부 사건을 왜곡되게 선전하는데다 우파진영은 이 분야 진실개기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로, 6·25전쟁의 대표적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노근리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미군이나 한국군 혹은 경찰에 의한 사건만 부각되었고, 북한군과 동네 좌익분자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공론화되지도 못했다. 그 결과, 후방 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었고, 6·25전쟁의 성격도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6·25전쟁에 대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려면 북한군과 남한의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실체를 알아야만 한다.

II. 해방 이후 좌우간 사상갈등에 기인한 사건들

우리 민족에게 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인 1918년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이다. 러시아에서 레닌의 10월혁명(1917.10)이 성공한 직후이다. 당시 한민족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주체였고, 국내로 전파한 것은 1920년초였다. 1920년대초 국내에 좌익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커지자, 일제가 치안유지법(1925)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통제했고, 이로 인해 좌익세력은 상당히 억제되었다.

해방 직후에 한반도에서는 공산세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직후 통치권 공백기를 이용하여 발빠르게 대응하여 좌익세력을 급속하게 확산시켰다. 하지 중장 등 미군은 9월 9일에서야 서울에 들어와 미군정을 수립했기 때문에, 25일간의 통치권 공백현상이 발생했다. 좌익세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조선공산당을 조직한데 이어 발 빠르게 건준(건국준비위원회), 인공(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준통치조직을 만들어 좌익세력 확장 및 통치권 장악에 나섰다. 더욱이 미군정도 좌익세력에 대해 활동의 자유를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좌익세력은 그 확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도 속속 우익인사들이 들어왔다. 이승만은 10.16 귀국했고, 김구 등 임시정부 인사들도 11.23, 12.1 두 차례에 걸쳐 귀국했다. 이들은 귀국 후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등 우익단체들을 만들어 결집시키고 국민계몽활동에 나섰다. 또한 모스크바삼상회의(1945년 12월말) 직후인 1946년 1월부터 우익은 반탁운동을 했으나 좌익은 반탁을 하다가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갑자기 찬탁으로 돌아선 탓으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갔다. 특히 좌익세력은 궁지에 몰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946년 5월 조선정판사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조선공산당이 당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인쇄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미군정으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박헌영은 미군정에 대해 대결을 선언하는 “신전술”(7월)을 발표했다. 그는 미군정이 체포령을 내리자 8월 몰래 장례식으로 위장하여 관속에 숨어 월북했고, 북한에 있으면서 남로당에 지령을 내려 사회를 혼란시킨 것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 1946년 9월 총파업과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10·1대구폭동사건이다.

9월총파업은 남로당이 산하의 좌익노동단체인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고문 김일성, 박헌영, 모택동, 회원 50여만 명)을 통해 파업을 일으킨 사건으로, 철도노동자(4만 명) 총파업에서 출발하여 전신, 체신, 출판 등 주요 산업으로 확산(25만 명)하여 사회를 마비시켰다. 이로 인해 전국의 철도가 한 달 동안 운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로당세력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대구의 전평 등 좌익노동단체를 중심으

로 좌익민간단체, 좌익학생단체 등과 합세하여 10·1대구폭동사건을 일으켰다. 대구10·1폭동 사건은 소련군,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사건이다. 폭도들은 경찰서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경찰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등 대구를 혼란에 빠트렸다. 이 사건은 대구시청 앞에서 “쌀을 달라”는 부녀자들의 시위 선동에서 시작했다. 이 시위가 폭동으로 비화한 계기는 대구의대 좌익학생 최무학이 대구의대 학생들과 함께 신원미상의 콜레라 병사자의 시신을 거리로 가지고 나와 경찰의 총에 죽은 희생자라고 선동한 시체시위였다. 시위대는 대구경찰서를 점령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폭동을 일으켜 경찰들과 우익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반란군은 미군정이 진압해 오자, 경북 왜관, 영천, 성주, 의성, 안동 등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좌익세력과 함께 경찰서를 점령하여 경찰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이 폭동은 경북을 넘어 경남, 충남, 경기, 강원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갔다. 이 사건으로 좌익세력은 많은 수의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살해함으로써 반공능력에 큰 타격을 주었고, 폭동 잔당들이 보복을 피해 인근 야산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이들은 산사람, 야산대라고 불리고 훗날 빨치산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¹⁾

9월총파업과 10·1대구폭동사건은 소련군-김일성-박헌영 순으로 지령을 내리고 조선공산당(뒤의 남로당) 주도 아래 전평 등 좌익단체들이 합세한 폭동이다. 이는 미군정을 혼란에 빠트려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사상전이자 체제전쟁이었다.

미군정은 어떻게든 한반도에 자유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단일독립국가를 만든 후 떠나려 했으나,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소련군의 저항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했다. 2차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 무산이 그것이다. 소련군은 미소공동위원회 때마다 임시정부 구성 문제와 관련, 찬탁을 주장하는 좌익세력만 참여시키고 우익들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졌다. 협상 실패 핵심요인은 소련군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남한의 우익세력 배제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소련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의 통일문제를 1947년 9월 19일 유엔으로 넘겼다. 유엔은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결정하고(11.14) 이를 실행하기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했다(1948.1.8.). 서울에 도착한 한국위원단은 남북총선거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소련군이 거부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유엔은 소총회의 결의로, 한반도에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1948년 5월 10일 남한단독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소련군과 북한, 그리고 남로당은 남한의 반공정부 구성을 무산시키기 위해 무장폭동을 기획했다.

이러한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것이 1948년 2·7폭동사건이며, 그 사건의 제주

1) 양동안, 『건국전후사 바로알기』(도서출판 대추나무, 2019), pp95-96.

도 판이 제주4·3사건이다. 이 사건은 북한과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제주 남로당책임자 김달삼이 주도해 일으킨 것인데, 폭동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제주도였다. 당시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 통제력이 약했고, 도민의 80%가 좌익계로 넘어갔다. 어린이 들조차도 남로당의 영향력 하에 있어 폭동을 일으키기 매우 적합한 환경이었다.²⁾

김달삼은 4·3 새벽 2시 봉화를 올리며 400여명의 무장대를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는데, 24개 경찰 지서 중 12개의 지서를 습격하여 다수의 경찰을 학살하고 무기를 탈취했다. 폭동군은 선거사무소, 투표소 습격, 선거공무원 학살, 전신선 차단, 유권자 투표방해 등 선거활동을 집중적으로 방해했으며, 이로써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북제주갑구와 을구)가 투표율 미달(43%와 47%로 기준 50%에 미달)로 무산되었다. 제주도에 국한해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 건국은 북한의 공작과 남한 공산세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제주4·3사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4·3사건 직후 경찰이 수거한 인민해방군 포고령 전단지에 따르면, “우리 인민해방군은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라고 하여 제주4·3폭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³⁾

제주 남로당은 제주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정권 수립을 위한 지하선거 투표를 실시했고, 김달삼, 안세훈,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 문등용 등 제주대표자들은 8.2 제주도를 탈출, 제주 주민들의 투표지 5만 2,000여 개를 가지고 서울을 거쳐 38선을 넘어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했다.⁴⁾

제주4·3사건은 북한의 지령과 남로당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 공산정권 수립을 측면 지원한 사건이었다. 남로당세력이 제주4·3사건으로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71.6%의 투표율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다.

김달삼이 월북한 후 제2대 사령관이 된 이덕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끌어들이 한라산을 근거로 수년간 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로써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희생자를 냈고 그 중에는 무고한 희생자도 많았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본질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1월 23일 CNN방송에 출연해 잘 말해주었다. 그는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주어야 한다”라고 해, 사건의 본질이 공산폭동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경의 진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 정당한 진압활동이 되는 것이다.

2) 이기봉, 『빨치산의 진실』(도서출판 다나, 1992), pp220.

3) 이선교, 『제주4·3사건의 진상』(도서출판 현대사포럼, 2007), pp83.

4) 이선교, 『제주4·3사건의 진상』(도서출판 현대사포럼, 2007), pp193-194.

III. 6·25전쟁 초기 한국 정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 논란

1. 이승만 정부의 좌익세력 경계 배경

6·25전쟁 초기, 이승만정부가 민간인을 학살한 보도연맹사건을 이해하려면 이승만정부의 좌익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건국(1948년 8월 15일)된 후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에서 지창수 상사 등 좌익 군인들이 제주 빨치산 토벌을 위해 출동하던 날 밤 출동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지창수 상사 등은 “남북통일을 위해 인민군으로 행동하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창수 상사, 김지회 중위 등 40여 명의 주동 반란군들은 동조를 거부하는 장교, 하사관 등을 즉결 처형하고 무기고를 탈취하여 겁먹은 3,000여 명의 장병들을 이끌고, 부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간좌익인사들과 합세하여 여수로 진격했다. 반란군들은 새벽 4시경 여수경찰서를 점령하여 수십명의 경찰들을 학살하고, 우체국 등 관공서들을 차례로 접수했다.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내걸었다. 반란군들은 집집마다 담벽에는 “인민군은 38도선을 돌파하여 서울 점령을 목표로 남진 중에 있다”는 등 거짓 선동벽보를 붙였다.

10월 20일 1개 대대는 여수에 남고, 2개 대대는 순천을 접수하기 위해 떠났다. 반란군은 전남 동부의 여수, 순천에 이어 광양, 보성, 벌교 등 6개 시·군을 장악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관청들을 접수한 후 인공기(북한기)를 게양하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산행정을 실시했다. 반란군들은 동네 좌익분자들을 앞장세워 우익인사 색출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동네 좌익분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그리고 우익인사들을 체포해왔고, 반란군들은 이들을 ‘반동분자 숙청’ 명분 아래 인민재판이나 무단 처형을 감행했다. 여수14연대반란사건으로 생긴 피해 규모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1949년 1월 10일 기준으로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망 3,392명, 중상 2,056명, 행방불명 82명 등 총 5,530명이다. 이 규모는 아마도 반란군에 의한 피해로 추정된다.⁵⁾ 여수에는 8일간 1,200여 명, 순천에는 4일간 1,134명 등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피살자가 나왔는데, 이는 동네 좌익분자들이 반란군에 협조하여 동네 집집마다를 수색하며 우익세력을 체포, 학살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여수에서는 10.20 오후 3시 여수시 중앙동 로타리에서 4만 명을 모아 놓고 인민대회를 열었는데, 이 때 지창수 상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수 인민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승만 일당의 주구 노릇을 하던 경찰과 친일파, 그리고 모리 간상배 등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소탕해야 합니다. ... 혁명에는 본래 사정(私情)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국하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전후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사건 조사연구보고서(민간인 학살을 중심으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35.

는 마음으로 이런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혁명과업 완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⁶⁾

중앙동 로타리에서는 인민재판이 매일 열렸는데, 10월 23일 오후 3시에 열린 인민재판에는 경찰, 우익인사 등 800여 명이나 판결을 받았다. 사형언도가 내려지면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했다. 처형방법은 잔인하여 죽창, 총검, 몽둥이 등으로 학살했고, 특히 경찰이 잡히면 구타 후 처형당하고 여순경을 신체를 절단하거나 훼손한 후 학살하였다.⁷⁾ 이렇듯, 여수와 순천에서 엄청난 우익인사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난 것은 그 동네 출신 좌익분자들의 앞잡이 노릇 때문이었다.

반대로, 구례의 경우는 반란군이 단 한 명도 살해하지 않고 10시간 만에 곱게 자진 철수했는데, 주된 이유는 반란군에 동조, 협조하는 자가 없어 반동분자를 색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⁸⁾ 결국 학살자가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는 그 마을에 북한군에 협조하는 좌익분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달린 문제였다.

정부는 여수14연대반란사건 발생에 대해 급히 진압군을 조직하여 8일 만에 진압을 완료했다. 국방부의 발표(11.10)에 따르면, 국군에 의한 진압과정에서 반란군 363명이 사살되었고, 반란군 혐의자 2,817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그중 410명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군도 61명이 전사했다.⁹⁾

또한, 반란군 잔당 1,000여 명은 진압군을 피해 지리산 등 산악으로 들어가 빨치산(좌익 무장 유격대)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이들의 반정부투쟁 내용을 소재로 한 소설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다.

여수14연대반란사건을 통해 이승만정부는 좌익세력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로부터 군내 좌익들의 실상을 보고받고 충격을 받은 후 로버츠 미군사고문단장을 불러 “당신네가 국방경비대를 만들면서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바람에 군내부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소.”라고 질책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반체제세력의 위험성을 깨닫고 국가보안법을 제정(1948년 12월 1일)해 좌익세력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49년부터 군 내부의 좌익 군인들을 제거하는 숙군작업을 전개했다. 숙군작업의 결과, 좌익군인으로 드러난 4,749명을 제거했고, 수사 중 탈영한 군인은 5,568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총수는 10,317명로서, 육군총병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인력이 군내부에 침투한 좌익 공산세력이었다는 것이다.

이승만정부는 1949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남로당세력을 뿌

6) 김학유, 『1948년 여순봉기』(역사비평사, 1991), pp259. (박윤식, “여수14연대 반란(여수순천사건)”, 도서출판 휘선, 2012.에서 재인용)

7) 박윤식, 『여수14연대 반란(여수순천사건)』(도서출판 휘선, 2012), pp41.

8) 이기봉, 『빨치산의 진실』(도서출판 다나, 1992), pp250.

9) 박윤식, 『여수14연대 반란(여수순천사건)』(도서출판 휘선, 2012), pp60.

리 뽑는데 전력을 다했다. 나아가 정부는 좌익성향 인물들을 전향시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으며, 군은 1949년 겨울을 이용하여 지리산, 백운산, 회문산 등 산악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빨치산도 대거 토벌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점은 여수14연대반란사건을 계기로 1949년 동안 남한 내부의 좌익 세력을 소탕한 후에 6·25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시 동조 반란을 막고 공산화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보도연맹이란 이승만정부가 1949년 조직한, 좌익에서 전향한 인물들로 구성된 우익 단체이다. 그런데 이 보도연맹 회원들은 북한군이 마을에 들어오자, 언제 전향했느냐는 듯 좌익분자로 되돌아가 북한군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950년 7월 16일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풀려났다. 북한 경찰(내무서 지칭)이 보도연맹의 도움을 받고 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난 좌익수와 보도연맹원들이 난폭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¹⁰⁾

이렇듯, 6·25전쟁이 일어나 북한군이 서울과 인천 등을 점령하자, 전향하지 않은 좌익분자들뿐만 아니라 전향을 선언했던 보도연맹원들도 북한군을 환영하고 북한군에 협조했다. 이들은 경찰 등 우익 인사들을 학살하는 데도 앞장섰다.

이에 정부는 좌익 전력자들의 북한군 협조 사태를 우려하여, 계엄령(제13조)에 근거해 ‘체포·구금 특별조치령’을 제정(7.12), 예비검속을 단행했다. 당시 예비검속에 대한 자세한 법령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민주신보>의 예비검속 관련 보도(1950.8.4.)¹¹⁾나 1951년 정부가 만든 예비검속 관련 공문서¹²⁾ 내용을 고려할 때, 이승만정부의 예비검속의 목적이 집단 처형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¹³⁾ 오히려 예비검속의 1차적 목적은 이들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을 경찰서 유치장, 형무소 등에 가두어 두는 것이었다.

예비검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 첩보기관(CIC), 사찰경찰 등이 예비검속한 사람들 중 일부를 집단 처형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북한군이 경남 진주 등으로 진격해오자

10)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푸른역사, 2006), pp43.

11) 민주신보 보도(1950.8.4)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장이 기자에게 “시국에 비추어 부득이 일부 맹원을 예비검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호전되면 곧 석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2) ① 1951년 2월 3일 계엄사령관이 각 지청장에게 보낸 예비구금 관련 문건에서는 ‘경찰이 예비구금을 할 때 인권을 경시하지 말 것, 엄정 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 내용이 있다. ② 1951년 12월 8일 계엄사령관이 빨치산 토벌부대인 백선엽 백야전투사령관에게 보낸 공문서에도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통비(적과 내통)할 우려가 현저한 자를 공비와 격리하기 위함’이며 ‘범죄로 인한 구속’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 있다.

13)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역사비평사, 2002), pp320-324.

극심한 공산화 공포에 사로잡힌 가운데, 전쟁 초기 대응 기준과 매뉴얼 부족, 사상검증 능력이 부족한 군과 경찰의 무리한 조치¹⁴⁾ 등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처형은 충북 이하 남쪽에서 주로 일어났는데, 진주 등 경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산 등 경북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좌익세력과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학살의 규모에 대해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수만 명 이상이라는 주장들이 많다.¹⁵⁾ 2009년 11월 과거사위원회에서는 “6·25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천 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3. 6·25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학살 논란, 노근리 사건

6·25전쟁에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근리 사건'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은 노근리사건을 반미 선전 선동 소재로 많이 활용했었다. 이후 수면 아래 있다가 1990년에 와서 친북 성향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미국 시카고대)가 왜곡이 심한 북한 자료를 근거로 처음 연구하였고, 그 내용이 1994년 한국에도 알려졌다. 나아가 1999년에는 AP통신의 보도를 통해 세계적인 이슈로 확산되었다. 이후 국내 좌파세력이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소재로 적극 활용하면서 커다란 역사적 사건으로 부각되었다.

노근리 사건이란 1950년 7월 말 미국 1기병사단 소속 부대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인근 경부선 철로 위에서 전투기에 의한 포격과 기관총 사격, 쌍굴다리에 모인 피난민들을 향한 총기 사격등을 통해 다수의 사상자(300-400여 명 설, 확인자는 182명)를 낸 사건이다.

그렇다면, 미군은 왜 갑자기 피난민들을 공격했을까?

당시에는 민간인 복장을 한 북한군이 피난민 속에 숨어든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들은 미군을 공격하거나 탄약과 무기를 수송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해당 부대는 피난민 통제에 골치를 앓았다. 미군 부대의 7월 24일 자 전투일지의 내용은 이렇다.

“피난민 통제는 어려운 문제였다. 누구도 무고한 인민을 사살하길 원치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 흰옷을 입은, 피난민으로 보이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은 달구지로 탄약과 중무기를 나르고 등에는 군사 장비를 짊어진 북한 군인들로 밝혀졌다. 그들은 자주 군복에서 민간인 복장으로, 다시 민간인 복장에서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목격되었다. 조사가 불가능한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었다. 흰옷 입은 한 남자가 여인과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여인은 임신 중이었다. 조사를 하자 여인은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역사비평사, 2002), pp188.

15)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역사비평사, 2002), pp188.

그러나 임신한 것처럼 위장하여 소형 라디오를 옷 속에 숨겨 가던 중이었다. 제1기병사단 지역의 민간인들과 피난민들은 엄격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사단은 이들의 이동은 낮 10:00~12:00에만 허용되며 어떤 소달구지, 트럭, 민간인 차량의 도로 운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령하였다.”¹⁶⁾

북한군의 노근리 현지 보고 자료에도 “전진하는 인민군의 공격과 후방 빨치산의 대담한 작전에 의해 적(미군 의미) 퇴로 차단이 결합으로 포위 섬멸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당시 미군이 인민군복을 입은 군인과 민간인 복장을 한 빨치산의 협공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렇게 볼 때, 미군이 피난민을 공격한 이유는 이들을 민간인 복장을 한 공산 게릴라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전투 초기 참전했던 미군의 미숙함도 일조했다. 이들은 전투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참전해 당황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혔고, 미군끼리 교전하는 등 오판도 많았다.

IV. 북한 점령기, 북한군과 남한 좌익 세력에 의한 양민 학살 문제

1. 북한 정권의 양민학살 지시 근거

김일성이 남침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함이었다. 공산화란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부르주아 계급을 중심으로 한 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지식인을 타도해야 하는데 이때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반동분자 숙청’이다.

김일성도 전쟁을 개시하면서 수시로 ‘반동분자 숙청’이라며 우익세력 척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다름 아닌 학살 지시였다. 김일성은 6·26 방송을 통해 “후방을 철옹성같이 다져야 한다. 도피분자, 요언(妖言) 전파 분자와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밀정 및 파괴분자를 적발, 가차 없이 숙청하고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해야 한다.”라고 했다.¹⁸⁾ 남침 직후 서울 시내에 뿌려진 김일성의 호소문에도 “반동분자, 비협력분자, 도피분자를 적발하여 ‘무자비’하게 숙청하라”¹⁹⁾라는 문구가 있었다. 1950년 6월 30일 발표한 포고문에도 “국군 장교와

16)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 2009), pp331-332.

17)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 2009), pp332.

18) 『남북한 관계 사료집(22권)』(김필재,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및 左翼측의 민간인 학살 행위”, 코나스넷, 2005년 9월 5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판·검사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면장, 동장, 반장 등은 인민재판에 부친다.”라고 했다.²⁰⁾ 부수상 겸 외상인 박헌영도 1950년 7월 1일 “반역자들을 체포, 처단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 줄 것”을 선동했다. 1950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대회에서 발표한 김일성의 보고에 따르면, “악질 반동에 대해 복수하려는 것은 극히 정당한 일입니다.”²¹⁾라고 했다.

이러한 각종 자료를 볼 때도 북한 정권 기관(북한군, 국가보위부, 내무서 등)과 민간 좌익 공산세력에 의한 민간 우익세력의 학살은 예정된 것이었다.

2. 인천상륙작전 이전 북한군 점령 지역의 민간인 학살

북한군은 전쟁 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7월 말에는 경상남·북도 일원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를 장악했다. 북한군은 점령 후 인민위원회(행정 조직), 내무서(우리의 경찰서)와 치안대(마을 치안조직) 등 통치조직을 만들고 동네의 좌익분자들을 동참시켰다.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들이 행한 악행은 우익인사 학살, 의용군 징집, 유력인사 납북 등이었다.

북한군은 남한 좌익분자들을 앞세워 경찰, 군인 가족, 지주, 자본가 등을 반동분자로 지목하여 살생부 명단을 만들고, 가가호호 수색하여 이들을 체포한 후 인민재판, 무단 처형 등을 통해 학살했다. 당시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라고 증언하곤 한다. 이는 북한군보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좌익분자들이 더 큰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군은 7월 부산 점령을 최우선 목표로 했기 때문에 호남지역에 군병력을 거의 주둔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민간좌익세력이 동네를 완전 장악했고, 그들에 의해 엄청난 학살극이 일어났다.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서 겪은 한 경험자의 증언을 들어보자.²²⁾

“동네에 한 50-60명 어린애들이 죽창을 어깨에 딱 걸치고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부르고 다녔지. 어렸으니 좌파고 우파고 뭐 알았겠나? (빨치산) 꺾기대회 때 구덩이를 파놓고 세 사람 세워놓고 ”반동은 죽여야 허지 않겠습니까“라고 크게 묻는거야. 전부 ”예“라고 하니 죽창으로 찌르고 발로 차 넣었어. 왜 그랬냐고? 뭐, 지주들이 죽어 없어져야 땅을 걸어 무상분배할 수 있다던가...”

19) 전라북도 경찰국, 『꽃피는 산하 - 6·25의 흔적을 찾아서』(전라북도 경찰국, 1980) (김필재,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및 左翼측의 민간인 학살 행위”, 코나스넷, 2005년 9월 5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20) 『정치범은 자수하라』·『반동분자 처리지침』(김필재,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및 左翼측의 민간인 학살 행위”, 코나스넷, 2005년 9월 5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21) 신일철, 『한반도 분단의 재인식』(나남, 1993) (김필재,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및 左翼측의 민간인 학살 행위”, 코나스넷, 2005년 9월 5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22)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나와 6·25』(도서출판 기파랑, 2010), pp64-65.

서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승종 전 국무총리는 당시 고려대 교수였는데, 체포돼 납북될 위기에 처했으나 구사일생으로 도피에 성공했다. 그의 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당시 서울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대신 남한 곳곳에 숨어있던 공산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출소를 점령하고, 남한에 있던 자본주의 세력들을 찾아내고, 젊은 남자들을 공산군에 입대시키기 위해 동네방네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공산군 앞잡이들이 우리 집 문도 두드렸고 나도 끌려나갔다.”²³⁾

북한군과 남한 좌익세력은 반동분자로 지목한 사람을 처형할 때도 매질 후 총으로 난사하거나, 죽창으로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사지를 절단해 죽이거나, 칼로 얼굴을 난사하거나, 차에 매달아 죽이거나, 산채로 구덩이에 묻는 등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했다. 서울법대 58학번으로 서울에서 원주 고향으로 가면서 온갖 경험을 했던 김기수씨는 “그들의 이런 잔인성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되물은 후, 일찍이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듯이 공산주의 본성과 본질에서 나온다고 이해했다.²⁴⁾

북한군은 남한 점령 3개월 동안 남한의 인력을 총동원하는 정책을 폈다.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들은 젊은 청년들을 선전·선동하거나 강제로 체포해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에 투입했는데, 이를 의용군이라고 했다. 그 규모가 15만 명에 이르렀는데, 훈련도 없이 전선에 투입되어 상당수가 총알받이로 희생되어 낙동강을 피로 물들였다. 북한군에 강제로 징집되어 총알받이가 된 의용군의 죽음도 학살당한 사례에 포함될 수 있다.

강제로 징집된 남한 주민들은 낙동강 전선에 의용군으로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약·식량의 보급품 수송, 교량·도로 보수 공사, 진지·참호 구축, 정찰·간첩 임무 등에도 투입되었다. 이렇게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보충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북한군이 징발한 민간인 규모는 60만 명에 이르렀다.²⁵⁾ 이들은 북한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미군의 폭격 등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들의 희생도 민간인 학살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낙동강에서 죽은 청년들의 죽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보급인력으로 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희생도 그렇다. 인민위원회 등 북한군의 앞잡이가 되어 이들을 체포하여 전쟁터로 보낸 부역자, 동네 좌익분자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동네에서 한 그들의 책임을 한 번도 제대로 거론해 본 적이 없다.

서울 점령 3개월 동안 북한군은 8만 명이나 되는 유력 인사들(정치인, 학자, 교사, 예술가 등)을 체포해 납북했다. 공보처 통계국이 1952년 3월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납북자가 82,959명으로 나타나 있다.²⁶⁾

23) 월간조선, 『60년전, 6·25는 이랬다』(월간조선사, 2010.6월호), pp149.

24) 이하우·최명, 『6·25와 나(서울법대 58학번들의 회고담)』(까치글방, 2010), pp43.

25) 남정옥, 『6·25전쟁의 재인식과 이해』(전쟁기념관, 2014), pp172-174.

이름과 주소가 확인된 숫자만 82,959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랍자가 116만 8,849명이라는 통계도 있다.²⁷⁾ 이들 중에는 정치인이 많았는데, 제2대 국회의원 210명 가운데 원세훈, 안재홍, 조소앙 등 27명이 납북되었고, 특히 제1대 국회의원(제헌의원)은 200명 가운데서 50명이나 납북되었다.²⁸⁾

인천상륙작전 직후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군은 이들을 철삿줄로 두 손을 묶은 채로 미아리 고개를 넘어 강제 압송했는데, 그 납북자 일부를 평양 등 곳곳에서 학살했다는 주장들도 있다. 이들을 직접 학살한 것은 북한군이지만 이들을 각 마을에서 체포하는 데는 마을의 좌익분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하고 체포한 것도 결국 그 마을 좌익분자들인 것이다. 8만명이 넘는 납북자 피해도 마을 좌익분자들이 그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

3. 인천상륙작전(9월 15일)과 서울 수복(9월 28일) 이후 민간인 집단학살

6·25전쟁 동안 공산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인천상륙작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이전에는 인민재판 등을 통해 ‘반동분자’로 지목된 경찰, 공무원, 지주 등 우익인사들에 대한 ‘선별적 학살’이 일어났고, 인천상륙작전 이후부터는 무차별 ‘집단학살’이 일어났다. 인천상륙작전 이후의 집단학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체포했던 우익인사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후 철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군이 후퇴한 이후에 남은 남한 내부의 좌익분자(빨치산 활동)들이 지역주민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경우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다급해진 김일성은 9월 27일 일시적·전략적 철수명령을 내렸고, 북한군은 앞다투어 후퇴의 길에 올랐다. 이것이 남·북한의 주민들에게 피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북한군은 후퇴하기 전 전국적으로 체포해두었던 우익인사들을 집단학살했다. 이미 1950년 9월 20일 전선사령관 김책(金策)은 우익 인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도록 지령을 내린 바 있다.²⁹⁾ 이에 따라 26일에서 30일 새벽까지 집중적으로 집단학살이 이루어졌다.³⁰⁾ 북한군은 대전형무소 6,000여 명, 전주형무소 1,000여 명 등 주요 형무소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산재한 내무서(남한의 경찰서)에 체포해두었던 우익인사들을 학살한 후 퇴각했다. ‘반동분자’들을 제거하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¹⁾

26) 정진석, 『납북』(기파랑, 2006), pp32-33.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4권)』, pp760. (정진석, 『납북』(기파랑, 2006), pp21.에서 재인용)

28) 정진석, 『납북』(기파랑, 2006), pp21-22.

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6)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p22.

30) 이때 시작된 북한군의 후퇴 행렬은 북한지역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민간인 학살극도 북한지역으로 이어졌다. 국가보위부, 내무서, 북한군, 북한지역 내 좌익세력(공산당 등) 등 북한정권에 의한 북한지역 민간인 집단학살은 국군이 북진을 개시한 10.1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한 10.9경부터 더욱 심화되었다.

31) 연정은, “북한의 남한점령시기 ‘반동분자’ 인식과 처리,” 서중석 외 6인공저, 『전쟁속의 또 다른 전쟁』(신언, 2011), pp302-304. (한화룡, “1950년, 황해도 신천학살사건의 진실, 전쟁의 그늘”(포앤북스, 2015)에서 재인용)

그러나 북한군이 퇴로가 막힐까 우려하여 급박하게 후퇴하는 바람에, 처형을 면하고 살아난 사람들도 많았다. 인천상륙작전과 신속한 서울수복으로 인해, 급박하게 전세가 역전되고 북한군이 급속히 와해되는 바람에 아군과 민간인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아군 병력 14만 명과 국민 200여만 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³²⁾ 유엔군과 국군이 낙동강전선에서 서서히 육상으로 북한군을 밀어 올렸을 경우, 아군병력 14만 명과 국민 200여만 명의 희생을 더 낳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북한군의 저항으로 더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을 것이고, 북한군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후퇴했을 것이기 때문에 동네 민간인들을 더 많이 납북하거나 학살하고 떠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들의 집단학살극은 주로 9·28서울수복 이후 10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북한 점령 당시 북한군을 도왔던 좌익분자들은 북한군이 철수하자 혼돈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들은 유엔군과 국군, 경찰이 돌아올 경우,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부터 직접 보복을 당하거나 군·경에 신고하여 처벌받을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악행을 증언하거나 보복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에 나선 것이다.

당시 빨치산 활동을 했던 김서용 씨는 9·28서울수복 이후 일어난 집단학살에 대해 “미군이 오면 우익 가족들이 보복할 것을 우려해 다 죽이기로 했다.” “빨치산들은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친척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다. 갓난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다.”라고 증언했다.³³⁾

이 시기에 일어난 참혹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실상은 2002년 월간조선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6·25사변 피살자 명부”(공보처, 1952)를 찾아냄으로써 드러났다. 이 명부에 피살자의 이름, 지역, 학살 일자, 발견지 등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9·28 이후 좌익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집단학살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명단의 5만 9,964명의 피살자 중 전남이 72.6%(4만 3,511명)에 이르렀고, 전북까지 포함하면 83%에 이르렀다.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 영광군이었다. 학살된 자가 2만 1,225명이었는데, 이중 2,500여 명이 10세 미만이였다. 이는 보복을 막기 위해 가족 단위로 집단학살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학살 피해자의 규모는 “6·25사변 피살자 명부”(59,964명) 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³⁴⁾ 명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통계연감(1952.10)에는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에 의한 민간인 피살자를 12만 8,900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정일권 장군의 수기 “6·25 비록”에는 16만 5천여 명이 학살(서울에만 9,500여 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53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발간한 “1952년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민간인 학살(122,799명)과는 별도로 민간인 사망자 236,475명, 행방불명 298,175명 등을 수록한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p193.

33) 월간조선사, 『6·25피살자 59964명』(공보처 통계국, 2003), pp26.

34) 월간조선사, 『6·25피살자 59964명』(공보처 통계국, 2003), pp14-16.

점을 고려할 때 학살의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³⁵⁾

4. 이승만 정부, 북한군 후퇴 시기(인천상륙작전-서울수복) 양민학살 대응조치

인천상륙작전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부역자들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역자들이란 북한군 점령통치 하에서 인민위원회 등 북한 점령 통치에 적극 참여하여 우익세력 학살, 의용군 징집, 유력 인사 체포·납북 등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말한다.

먼저 이승만 정부는 인천상륙작전에 성공(9.15)하고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군 점령기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복감정을 가지고 북한군 협조자들을 사적으로 보복하거나 학살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3일 뒤인 9월 18일, 사형(私刑) 금지법을 가결했다. 뿐만 아니라 육군본부도 서울수복을 3일 앞둔 9월 25일, 민간인에 대한 사적인 가해를 금지하는 훈령을 발표했다. 군인들이 사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울을 수복한 9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탈환 지역에서의 사적인 원한에 의한 타살, 구타, 구금 등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나 가족들이 사적으로 보복조치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10월 13일 부역자 처리법을 확정하고 가결했다. 이것은 북한군 점령기 3개월 동안 북한군에 협조해 우익세력 학살 등을 저질렀던 부역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범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대응조치는 더 큰 학살극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군은 항복하는 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교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V. 북진 시기(1950년 10월), 북한에서의 양민학살 실상

1. 후퇴하던 북한정권의 북한주민 집단학살극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되찾았고 국군은 10월 1일부로, 미군은 10월 9일부로 38선을 통과하여 북진을 시작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전역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시신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신들이 발견된 지역은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

35)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 2009), pp254-255.

도, 강원도 등 북한 전역이었다. 시신들이 집단으로 발견된 장소는 교화소(감옥), 정치보위부, 내무서, 동굴, 터널, 방공호, 공동묘지, 우물, 개울, 저수지, 바다 등 다양했다.

북한 지역에서 대표적 집단학살 지역은 함북 함흥으로, 2만여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함흥지역 집단시신 발견 장소로는 함흥감옥 700여 구, 총령탑 지하실 200여 구, 정치보위부 지하실 300여구, 함흥 북쪽 덕산 니켈 광산 6,000여 구, 함흥 뒷산 반룡산 반공굴 8,000여 구 등이었다.³⁶⁾

함북 함흥뿐 아니라 함남 영흥(영흥 반공호 1520호 등), 평남 평양(칠골리 2,500여 구, 승호리 4,000여 구 등), 황해도 신천·재령(35,000여 구 등) 등 북한 전역에서 집단 시신이 발견된 곳이다.

북한군은 국군이 동해안에서 북진을 개시한 10월 1일에 퇴각하며 학살을 시작했다.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한 10월 9일 이후에는 대대적인 집단학살극을 벌였는데, 이들이 학살한 대상은 ‘반동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었다. 반체제세력으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는 목사 등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남한에서 납북된 인사들이나 국군 포로들도 있었다.

평양교화소(500여 구), 함흥교화소(700여 구), 원산인민교화소, 해주교화소 등 북한 전역에 산재한 교화소(형무소), 정치보위부 등에서 집단시신이 발견되었는데, 평양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1사단장 백선엽 장군의 수기 <군과 나>에도 평양교화소에서 본 집단 학살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평양형무소를 들렀을 때다.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우물마다 시체가 가득하고 맨 땅 곳곳에도 생매장한 시체가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았다. 적들은 납북 인사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를 모조리 학살하고 달아난 것이었다. 일대는 악취가 가득 하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³⁷⁾

북한지역에서는 교화소(형무소), 정치보위부 등 구금 시설뿐 아니라 공동묘지, 개울가, 저수지, 동굴에서도 민간인들의 집단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인민군이 후퇴하던 상황에서도 민간인들을 무차별 예비검속하여 마구잡이로 처형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 정권이 국가보위부 주도로 내무서(경찰서)에 예비검속과 처형을 지시한 결과였다. 내무서는 장차 들어올 유엔군과 국군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색출, 검거하여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 이때, 지역 사정과 인물들의 사상을 잘 아는 동네 좌익분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북한정권은 이렇듯, 지역 내 좌익분자들의 협조를 받아 반공 우익세력들을 대거 학살한 후 북으로 후퇴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이 떠나고 유엔군과 미군이 점령하자

36) 박계주, 『자유공화국 최후의 날』(정음사, 1955), pp78. ; 박남식, 『실락원의 비극』(문음사, 2004), pp169-172. (한화룡, 『1950년 황해도 신천학살사건의 진실, 전쟁의 그늘』(포앤박스, 2015)에서 재인용).

37) 백선엽, 『군과 나』(시대정신, 2010), pp129.

“여태까지 세도를 부리던 빨갱이는 온데간데없고 집집마다 남은 것은 곡성뿐이다.”라고 탄식했다.³⁸⁾ 북한군이 후퇴한 후, 우익인사들은 치안대를 구성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반공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11월 말 중공군이 공격을 개시하고 12월 초 유엔군과 국군이 후퇴를 시작했다. 북한 정권은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던 반공 우익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지역의 반공우익세력은 후퇴하는 유엔군과 국군을 따라 남으로 대량 탈출에 나섰다. 유엔군이 함경남도의 흥남부두를 통해 철수 작전을 전개하자, 인근 북한 주민들 30여만 명이 흥남부두로 몰려들어 “배를 태워주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알몬드 군단장 등 미군지휘부는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 다량의 폭탄과 휘발유 등 전쟁물자들을 부두에서 폭파하고 그 빈공간에 10여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을 태워 거제도 등으로 안전하게 피난시켰다. 미군이 이들을 구제한 이유도 놔두면 북한정권이 이들을 집단학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서해에서도 백령도, 강화도 등 큰 섬들은 물론 작은 섬들에도 피난민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예를 들어 백령도는 당시 주민이 17,813명이었는데, 피난민 수는 62,082명이나 되었다. 북한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국군이 떠나고 나면 반동분자 숙청의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³⁹⁾

2. 신천양민학살사건의 진실

북한은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할 당시 인민군이 행한 학살에 대해 미군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천학살사건이다. 북한의 주장은 이렇다. 해리슨 대위라는 사람이 이끄는 미군부대가 북진하던 중 35,000여 명의 신천지역 양민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신천박물관을 만들어 ‘미군이 톱으로 민간인의 머리를 자르는 그림’ 등 잔혹한 학살 자료들을 전시하여 북한주민들에게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해리슨이라는 이름의 미군은 존재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대위가 이끄는 중대급 부대가 그 정도의 대규모 학살을 주도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미군이 북진할 때 황해도 신천지역을 잠시 들렀을 뿐 전혀 작전을 전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당시 경험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미군이 38선을 통과한 것은 10월 9일, 평양에 도착한 것은 10월 19일이었다. 당시는 국군 1사단과 서로 먼저 평양을 장악하려 경쟁하며 정신없이 북진하느라, 신천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할 상황이 아니었다. 더욱이 당시 미군은 양민학살은 물론 항복한 북한군에게 사격을 가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이런 내용은 백선엽 장군의 수기 <군과 나>에도 나와 있다.⁴⁰⁾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45-48.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48-49.

그러면 신천양민학살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건의 발단은 북한정권이 후퇴를 앞두고 주민들을 예비검속하여 ‘반동분자 숙청’을 하라는 지시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황해도 도당은 1950년 10월 11일 북으로 철수하라는 명령과 함께 정치보위부와 내무서에 “반동들을 색출 검거하여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국방군(대한민국 국군 지칭)과 국제연합군(유엔군 지칭)에게 협력하는 자들을 말소시키고 도내 반적대, 구월산 학생 유격대 등 무장 반동들과 야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지시에 따라 황해도 신천내무서(경찰서)에서는 10월 13일 포고문을 발표했는데, “반동적인 유언을 퍼뜨리는 자” 등 5가지 해당자에 대해 색출 검거하는데 협력할 것과 이들을 인민의 이름으로 총살할 것을 지시했다. 당일 선천읍과 각 면에서는 교수장, 총살장 등 사형 집행장이 설치되고 집단학살용 방공호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지역 공산당원들이 긴 칼과 죽창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엌, 헛간, 뒤주 등을 샅샅이 뒤졌다. 예비검속과 학살 열풍이 시작된 것이다. 13일 시작된 집단학살극은 황해도 신천군 뿐 아니라 인근 안악군, 재령군, 은률군, 송화군 등 모든 황해도 지역에서 일어났다.⁴¹⁾

이러한 집단학살극이 일어나자, 재령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미군이 올 때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우익인사들이 10월 13일, 학살에 대한 반공 저항 운동을 일으켰다.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만 살겠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소… 더욱이 수륙만리 타국에 와서 피 흘리며 싸우는 연합군들을 더 대할 수 없을 것 아니겠소… 하여간 우리가 지금 학살당하는 애국 동지들을 목전에 놓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용서 못 할 일이거니와 하느님 앞에서도 죄가 될 것이오.”라며 집단학살에 대한 저항운동에 나섰으나 인민군의 진압으로 실패하였다.⁴²⁾

재령 인근 지역인 신천에서도 10월 13일, 기독교인 등 우익인사들이 민간 유격대를 만들어 북한군의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 총, 낫, 죽창 등을 들고 저항운동에 나섰다. 이 신천 반공유격대는 며칠간 인민군과 교전하며 북한군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군 후퇴 후 치안대를 구성하여 치안권을 행사하면서 북한군 패잔병들과 학살에 연관된 좌익분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처단하는 등 학살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로써 또 다른 민간인 학살극이 일어난 것이다.⁴³⁾ 이 때문에 신천 지역에서 유독 많은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40) 백선엽, 『군과 나』(시대정신, 2010), pp.126-127.

41) 한화룡, 『1950년, 황해도 신천학살사건의 진실, 전쟁의 그늘』(포앤북스, 2015), pp88-92.

42) 한화룡, 『1950년, 황해도 신천학살사건의 진실, 전쟁의 그늘』(포앤북스, 2015), pp93-94.

43) 신천지역 반공유격대는 중공군이 내려오자 치열하게 싸우다가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등지로 피난해 미군과 국군 소속의 유격대로서 수시로 황해도 지역에 침투하여 북한군과 유격전을 벌이곤 했다. 이로서 신천 등 황해도지역에는 쌍방간 피살자가 많았던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3. 서울 수복 이후 남한 지역 빨치산에 의한 양민 학살과 토벌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과 서울 수복(9월 28일) 이후, 인민군은 북으로 후퇴했으나 퇴로가 막혀 남한 각지의 산악으로 들어간 패잔병들도 많았다. 이들은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 백운산, 회문산 등 남한 각지의 산악을 근거로 빨치산이 되어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북한군을 도왔던 남한의 좌익분자들도 역시 그들을 따라 월북을 하거나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지리산 등 산악으로 들어가 북한군 패잔병들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하기도 했다.

비상경비사령부 정보처의 통계에 따르면 1950년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한 각지에서 활동했던 공비(빨치산)의 규모는 약 6만 명에 달했다. 이는 남한 지역 내에서 대남 저항 세력의 규모가 엄청났음을 의미했다.⁴⁴⁾ 6·25전쟁 발발 당시 대한민국 국군 전체 규모가 9만여 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한 지역의 산악에서 활동한 빨치산 규모가 6만이었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다.

11월 말 중공군이 개입하고 12월 들어 유엔군과 국군이 남으로 후퇴를 시작하자, 남한 각지의 산악을 근거로 활동하던 빨치산들은 사기가 높아져 대남 투쟁활동을 강화했다. 당시 빨치산들은 산악을 근거로 활동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포섭하여 세력을 넓혔다. 이들은 밤이면 주민들을 협박하여 음식, 옷 등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학살로 보복 조치를 했다. 이러한 빨치산의 활동으로 인해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 공화국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정부에서는 후방에서 활동하는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을 창설하고 빨치산 토벌전도 전개했다.

4. 거창양민학살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은 11사단 소속 부대가 지리산 주변 빨치산들을 토벌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었다. 1951년 2월 8일, 400~500명의 빨치산들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원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과 청년의용대 대부분을 사살하고, 10여명 만이 겨우 탈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11사단 일부 부대가 빨치산을 토벌하러 신원면에 들어가자, 빨치산들은 산골로 퇴각했다. 이후 토벌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 빨치산들이 다시 신원면에 나타나 경찰을 위협했다. 이에 토벌대는 신원면으로 되돌아와 9일에서 11일까지 3차에 걸쳐 인근 주민들을 불러 모아 선별한 후 처형하였다.

이 사건은 토벌 부대원들이 흥분한 탓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공비(빨치산)이거나 공비

44)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 2009), pp311.

와 내통한 세력일 수 있다는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때 살해된 사람이 약 7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공비(빨치산)들이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공비토벌과정에서 지역주민 대부분을 집단적으로 처형한 것은 6·25전쟁이 남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정치 쟁점화되어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고, 책임자인 9연대장 오익경 대령은 무기징역, 3대대장 한동석 소령은 징역 10년 등의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

거창양민학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군·경이 민간인들을 처형한 사건에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의 빨치산 협조문제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주민들이 산악을 근거로 활동하는 빨치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군경의 진압을 방해하거나 빨치산들을 피신하게 해주는 역할도 했었다. 물론 빨치산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한 사람들도 많기는 했지만 말이다. 당시 빨치산 활동을 했던 비전향자 정관호의 “전남유격투쟁사”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에 대해 식량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빨치산을 도와주었고 뒷바라지해 준 인민들”이라며 고마워했다. 이런 이유로, 토벌하는 군경(군인, 경찰)들은 지역주민들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토벌 과정에서 강경 진압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⁴⁵⁾

5. 국군의 빨치산 토벌 작전과 대응

북한군 패잔병들과 남한 좌익세력들로 이루어진 빨치산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 체제로의 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사상적 동지들이었다. 이들은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했고 전쟁 중 군수물자 수송 차단을 위한 철도 폭파, 열차 습격, 철교 폭파, 그리고 아군의 통신 방해를 위해 전선 절단, 전신주 파괴 등을 자행했다. 또한 형무소 습격, 경찰서 습격, 군 주둔지 공격, 미군 전투기 격추 등 온갖 무장투쟁을 자행했으며, 이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전방에서 전투가 소강상태를 보이던 무렵인 1951년 11월 25일, 정부는 백선엽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백야전 전투사령부를 설치했다.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전주를 거점으로 하여 지리산 등 영호남 일대의 빨치산들을 토벌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규모는 정규군 3개 사단, 전투경찰 4개 연대 등 총 5만여 명에 달했다. “쥐잡기” 작전명의 공비 토벌 작전은 1951년 12월 2일에서 1952년 3월 14일까지 총 4번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951년 12월 한 달 동안 공비 약 4,000여 명을 사살하고 약 4,000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⁴⁶⁾

공비 토벌군사령관 백선엽 장군은 거창사건에서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 특별한 지시를

45) 현대사상연구회,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1), 188-190.

46) 양영조·남정옥, 『알아봅시다! 6·25전쟁사(제3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114-115.

내렸다. ‘모든 예하 장병은 작전기간 중 부락 근처에서 숙영하지 말 것, 물 한 모금도 그냥 얻어 마시지 말 것, 식량은 여유 있게 지급되니 주민들에게 나눠줄 것, 저항하는 자 이외에는 절대로 쏘지 말 것’ 등을 강력히 지시하였다. 이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야 작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였다.⁴⁷⁾ 백선엽 장군은 죄를 지은 빨치산들은 쫓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가담자의 가족들은 최대한 구조하려 했다.

6. 양민 학살의 주도 세력과 그 원인

6·25전쟁 중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는 북한군과 남한의 좌익세력이 합세해 점령통치를 했고,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는 북한지역에 있던 우익세력 즉 반공세력과 합세하여 북한군에 대항했다. 다시 말하면 남한지역에서나 북한지역에서나 공산사상을 가진 세력은 동지로 뭉치고, 반공(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은 공산주의에 대항해 함께 뭉쳤다. 그러므로 6·25전쟁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과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간의 사상전쟁이자 체제전쟁이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학살의 책임이 있을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군과 마을의 좌익분자들이 합세한 공산주의세력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북한군이 남한지역을 점령했을 때, 학살은 주로 북한군과 남한의 좌익분자들에 의해 일어났다. 분노한 일부 우익세력들이 보복을 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적 보복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영광군 백수면의 한금례 씨는 6·25전쟁의 실상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공산당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잘못 걸리면 온 가족을 전부 죽였으니까. 운이 있으면 살고 운 없으면 죽고. 그 사람들 기분 내키는 대로 죽이고 살리고 했어.”⁴⁸⁾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할 당시에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대량 민간인 학살의 주범은 북한정권과 북한지역내 마을의 좌익분자들이었다. 황해도 신천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국군과 유엔군 점령기에 피해를 입었던 우익세력에 의한 보복조치도 있었지만, 북한정권이 광범하게 자행한 집단학살에 비교할 바는 아니었다. 함흥에서 시체발굴 단원으로 활동했던 김인호 씨는 동굴 속에서 죽은 수천, 수만 구의 학살당한 시신들을 처리하면서 꿈인가 생시인가 꼬집어 보기도 했고, “왜 공산당 빨갱이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가?”라고 스스로 반문했다.⁴⁹⁾

그러면 왜 공산주의자들은 민간인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을까? 학살의 이유와 근거는

47) 백선엽, 『군과 나』(시대정신, 2010), pp268.

48) 월간조선사, 『6·25피살자 59964명』(월간조선사, 2003), pp23.

49) 김인호, 『릉라도 여관』(경지출판사, 2016), pp192-193.

뭘까?

공산세력이 반공 우익세력을 잔인하게 학살한 이유는 바로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등 공산주의 사상은 평등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이 혁명을 일으켜 부르주아 계급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피를 흘리는 내전이 일어난 것이다.

프랑스 학자들이 만든 “공산주의 흑사”에 따르면 1917년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된 이래 1991년 소련이 멸망할 때까지 70년간의 공산주의 역사에서 피의 숙청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공산주의에 의해 학살당한 규모는 약 1억 명 이상으로 보았다. 그 중 구소련은 2,000만 명 이상, 중공(모택동)은 6,500만 명, 베트남 100만 명, 북한 200만 명, 캄보디아 200만 명, 아프리카 1,500여만 명 등으로 산정했다.

이렇듯, 6·25전쟁에서 북한군과 남한의 좌익세력이 학살의 주범이었던 이유도 바로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VI. 마무리

6·25전쟁은 단순히 북한과 남한의 군사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공산세력과 반공 자유민주세력 간의 사상전, 체제전쟁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6·25전쟁을 이해해야 전쟁 와중에 있었던 수많은 민간인 학살문제를 객관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6·25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공산주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 김일성이 남침한 것도 공산주의이론에 따라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때문이며, 북한군과 좌익세력이 우익세력을 ‘반동분자’로 몰아 잔혹하게 학살했던 것도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한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반이 있었기에 북한군과 남한 좌익분자들은 사람을, 그것도 친한 이웃을 죽이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6·25전쟁 시 마을에서 일어난 좌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통해 배우는 공산주의 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민을 둘로 나눈 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좌파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우파들을 박해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문정권은 2017년 5월 집권 후 국민을 좌파와 우파로 둘로 나누고 좌파세력을 촛불혁명이니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우대하고 우파세력에 대해서는 보수세력이니 적폐세력이니 하면서 매도하며 학대했다. 문정권 주도세력은 수시로 “보수세력, 불태워야 한다”, “궤멸시켜야 한다” 등으로 보수국민을 적폐로 몰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원외당협위원장과 오찬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촛불민심만 생각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문정권은 지금 4년 동안 그렇게 국민을 양분했는데, 이를 읍면동 마을까지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2021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3,491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도권을 마을 좌파세력이 장악하도록 하고, 우파주민들을 강력히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6·25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이 한결같이 주민자치기본법의 내용을 보고는 6·25전쟁 당시 인민위원회 같다고 우려하는 것이다.⁵⁰⁾

“Freedom is not free”라는 명언처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인지 깨달았으면 한다. 6·25전쟁의 사상전, 체제전쟁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이를 토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의 실체와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다.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국민들 앞에는 줄다리기 게임의 두 줄이 놓여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냐?”, “사회주의체제냐?”의 체제줄다리기인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여러 가지 선택할 체제가 있는 줄 아는데, 실제 제3의 줄은 없다. 두 줄밖에 없다. 왜냐? 현재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주의세력의 주류가 주사파이기 때문이다. 주사파란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을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6·25전쟁 과정에서 직면했던 체제전쟁 상황으로 되돌아 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체제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유권자 각성운동 뿐이다.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다”, “유권자 각성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공산주의 왜 위험한가”, “문재인정권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허물기” 등의 실체를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작업이다. 유권자를 각성시키는 국민운동만이 사회주의로 달리는 대한민국 열차를 정지시키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각성되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체제이기 때문이다.⁵¹⁾

50) 이희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도서출판 대추나무, 2021), pp118.

51) 이희천,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도서출판 대추나무, 2001), pp10.